

창녕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96호 2024. 3. 28.(목)

조 례

- 창녕군 조례 제2803호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2
- 창녕군 조례 제2804호 창녕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창녕군 조례 제2805호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창녕군 조례 제2806호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 창녕군 조례 제2807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 창녕군 조례 제2808호 창녕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49
- 창녕군 조례 제2809호 창녕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 창녕군 조례 제2810호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공 고

- 창녕군 공고 제2024-511호 2023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80
- 창녕군 공고 제2024-565호 길곡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109
- 창녕군 공고 제2024-568호 유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118
- 창녕군 공고 제2024-57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140

회 람								
--------	--	--	--	--	--	--	--	--

조 례

창녕군의회에서 의결된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인

2024년 3월 28일

창녕군 조례 제2803호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조례전문】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4.12.24 조례 제2170호

(일부개정) 2021.10.21 조례 제264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창녕군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지정된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03., 2020.10.7.>

1. “외국어교육특구”란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창녕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말한다.
2. 삭제 <2020.10.7.>
3. “수탁사업자”란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1.03.>

1. 학교 외국어교육강화 및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사업
2. 창녕영어마을 운영
3.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
4. 교육여건 개선사업
5. 그 밖에 외국어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제4조(외국어교육특구운영위원회) ① 외국어교육특구운영위원회는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녕군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가 한다.

- ②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거나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외국어교육특구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재정운영내역서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수탁사업자가 요구하는 사항의 의결 또는 승인

제2장 수탁사업자의 지정 등

제5조(수탁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① 군수는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특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서비스업무와 관련하여 대규모 학생의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외국어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자체 개발능력이 있는 자
2.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우수한 원어민 교원 또는 강사에 대한 수급·관리능력이 있는 자
3. 영어 관련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인된 교육시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영어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공인된 교육시설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영어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및 대학교에서 관련 강의경력이 주당 6시간 이상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
6. 영어 관련 전공자로서 대학 및 대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자

③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재 협약의 방법에 따라 연장 위탁 할 수 있으며, 재 협약은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 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지정요건과 관련된 세부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창녕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탁사업자가 지정되면 수탁사업자와 특화사업의 업무수행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위탁의 범위, 예산지원의 내용, 수탁사업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2021.10.21.>

제7조(수탁사업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특화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업자의 특화사업 운영) ① 수탁사업자는 특화사업이 교육 사업임을 감안하여 협약(계약)내용을 신의와 성실로써 충실히 이행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업자는 특화사업 운영 시 군민의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영어말하기 대회, 해외연수 등 각종 행사 개최
2.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개최
3.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 시 프로그램 이용 횟수, 학습 참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마일리지의 운영

③ 제2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 및 우수자에 대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④ 수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행사시기 및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9월말까지 수탁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재정운영 내역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사업연도 3월말까지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영어마을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경고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2조(재원조달 등) ①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군의 일반회계예산 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20.10.7.>

제14조

삭제 <2020.10.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이루어진 수탁사업자의 지정, 수탁사업자에 대한지원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7.11.03. 조례 제2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6호,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4호, 2021.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 례

창녕군의회의에서 의결된 창녕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인

2024년 3월 28일

창녕군 조례 제2804호

창녕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녕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만65세” 를 “65세”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세대주는 제외한다.</p> <p>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u>만65세</u> 이상</p> <p>2. (생 략)</p> <p>② (생 략)</p>	<p>제3조(지원대상) ① ----- ----- ----- ----- -----.</p> <p>1. ----- <u>65세</u> ---</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조 례

창녕군의회에서 의결된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인

2024년 3월 28일

창녕군 조례 제2805호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사용 신청서” 를 “사용(변경, 기간연장) 신청서”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중 “납골함에 봉안하여” 를 “봉안함에” 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중 “납골함” 을 “봉안함” 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용변경신고) 추모공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추모공원 사용권이 상속으로 승계되었을 경우
3. 무연고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되었을 경우

제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봉안유골의 위치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봉안유골 위치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부의 유골을 봉안하고자 할 경우
2. 무연고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되어 유연 봉안실에 봉안하고자 할 경우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사용승인 등)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제6조의2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변경, 기간연장)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 기간연장) 증명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추모공원 사용 신청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어야 하며, 유골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추모공원 안치) ① 군수가 추모공원 사용을 승인한 경우 안치단의 위치배정은 봉안 접수순으로 한다.

제6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6(봉안실 설치 및 관리) ① 추모공원의 봉안실은 유연고와 무연고로 구분하고 봉안함은 밀폐형과 투시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안치단 전면에는 사망자 성명, 봉안일 등을 기록·관리한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경우에는 봉안함에 봉안일, 개장장소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안치단에는 추모공원에서 안내하는 부착물 외 사용자가 임의로 부

착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7조의 제목 “사용자”를 “사용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에 따라 추모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추모공원의 사용”으로, “사람으로 한다”를 “경우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창녕군에 주민등록이나”를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창녕군에”로, “배우자(타 지역 거주자 포함)”를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람”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배우자”를 “배우자가 사망하여 부부함에 안치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7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사용기간은 부부함에 안치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8조제1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이미”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 신청서를 받아야 하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유족.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9조제2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을 인도한 경우

② 추모공원 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사용승인의 취소)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추모공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30일 이내 개장” 을 “개장”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조례 제2534호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조례 제2534호, 2020.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모공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모공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희생·공헌자의 범위(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제1호 관련)

법 률 명	대 상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용(변경, 기간연장) 신청서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신청자 (사용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구분	연고자(무연고자): 호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p>「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창녕추모공원 사용(변경,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p> <p>창녕군수 귀하</p>					
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사망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신청자(사용자)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1부.				

사용(변경, 기간연장) 증명서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신청자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구분	연고자(무연고자): 호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p>「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창녕추모공원 사용(변경, 기간연장)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창 녕 군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사용 신청을 하여야 함 - 사용자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할 시는 사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사용신청) ① 추모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u>사용 신청서</u>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삭 제</p> <p>③ 화장한 유골은 일정규격의 <u>납골함에 봉안하여</u> 안치하고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유골을 안치할 <u>납골함</u>은 사용자가 구입한다.</p>	<p>제6조(사용신청) ① ----- ----- -----<u>사용(변경, 기간연장) 신청서</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봉안함에</u>----- -----</p> <p>④ ----- <u>봉안함</u>----- -----.</p>
<p><u><신 설></u></p>	<p><u>제6조의2(사용변경신고) 추모공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u>1. 추모공원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u></p> <p><u>2. 추모공원 사용권이 상속으로 승계되었을 경우</u></p> <p><u>3. 무연고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되었을 경우</u></p>
<p><u><신 설></u></p>	<p><u>제6조의3(봉안유골의 위치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봉</u></p>

<신 설>

안유골 위치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부의 유골을 봉안하고자 할 경우

2. 무연고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되어 유연 봉안실에 봉안하고자 할 경우

제6조의4(사용승인 등)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제6조의2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변경, 기간연장)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 기간연장) 증명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추모공원 사용 신청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어야 하며, 유골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 설>

제6조의5(추모공원 안치) ① 군수가 추모공원 사용을 승인한 경우 안치단의 위치배정은 봉안 접수순으로 한다.

<신 설>

제6조의6(봉안실 설치 및 관리) ① 추모공원의 봉안실은 유연고와 무연고로 구분하고 봉안함은 밀폐형과 투시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안치단 전면에는 사망자 성명, 봉안일 등을 기록·관리한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경우에는 봉안

제7조(사용자) 제6조에 따라 추모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창녕군에 주민등록이나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타 지역 거주자 포함)

2. 삭 제

3. 창녕군에 있는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

4. 추모공원에 이미 안치된 사람의 배우자 <단서 신설>

5. (생략)

제8조(사용기간) ① 추모공원의 사용기간은 유연고 유골의 경우 15년으로 하며, 무연고 유골의 경우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생략)

함에 봉안일, 개장장소 등을 기록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③ 안치단에는 추모공원에서 안 내하는 부착물 외 사용자가 임의로 부착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7조(사용대상) 추모공원의 사용은 -----

경우로 한다.

1.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창녕군에 ----- 배우자

2. (현행과 같음)

3. -----
-----경우

4. -----
-- 배우자가 사망하여 부부함에 안치하려는 경우. 단, 사용기간은 부부함에 안치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5.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기간) ① -----

----- 5년-----.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등) ① (생 략)

② 군수는 사용신청을 한 사람이
봉안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2
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3. (생 략)

4.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5. · 6. (생 략)

②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료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의 유족

제9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골
인도 신청서를 받아야 하고, ----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

-----.

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
표 3과 같다.

<삭 제>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 6. (현행과 같음)

② -----

-----.

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유족.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3.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의 배우자

③ (생략)

제11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1. 2. (생략)

<신설>

② 추모공원의 사용권은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신설>

제14조(개장명령) ① 군수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과 같다.

<삭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제9조제2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을 인도한 경우

② 추모공원 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의2(사용승인의 취소)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추모공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개장명령) ① -----

-----개장-----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별표 3]

희생·공헌자의 범위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제1호 관련)

법 률 명	대 상 자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 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창녕추모공원 사용(기간연장) 신청서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신청자 (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구분	연고자, 무연고자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공원 사용(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사망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신청자(관리자)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1부.			

사용(변경, 기간연장) 신청서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신청자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구분	연고자(무연고자): 호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창녕추모공원 사용(변경,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사망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신청자(사용자)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봉안번호	신청일자	
사용내용	신청기간		
	사용일수	사용료 납부금액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전화번호	관리자와의 관계	
신청금액	일금	원 (원)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 1부. 2. 통장사본 1부. 3.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신 설>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봉안번호	신청일자	
사용내용	신청기간		
	사용기간	사용료 납부금액	
신청자 (사용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신청금액	일금	원 (원)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 1부. 2. 통장사본 1부. 3.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별지 제3호서식]

사용(변경, 기간연장) 증명서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신청자 (사용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구분	연고자(무연고자): 호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제6조의4에 따라 창녕추모공원 사용(변경, 기 간연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념 군 수 -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사용 신청을 하여야 함 - 사용자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할 시는 사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신 설>

[별지 제4호서식]

유골인도 신청서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사용 신고	봉안번호		봉안일자	
	신고기간		사용료 납부금액	
	사용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신청자 (사용자)	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개장사유			
개장 사항	개장장소			
	개장일자			
	비고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따라 창녕추모공원에 봉안 중인 유골의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용(변경, 기간연장) 증명서 1부.				

유 골 인 수 증	
<input type="radio"/> 사망자 성명:	<input type="radio"/> 생년월일(성별):
<input type="radio"/> 봉안번호:	위의 봉안 중인 유골을 인수함.
유골인수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유골인계담당자 (서명 또는 인)

<신 설>

[별지 제5호서식]

봉안유골 위치변경 신청서					
사망자	기 존		변 경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남/여)	생년월일	(남/여)	생년월일
	봉안번호		봉안번호		
신청자 (사용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신청사유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봉안유골의 위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첨부서류: 부부 유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 련 법 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 화장 ”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 화장 시설 ”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 1. 28.>
11. 삭제 <2015. 1. 28.>
12. 삭제 <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 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및 제28조의2·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

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 봉안시설 또는 공설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의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

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과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

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轉役)·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從軍)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란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애등급(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

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 례

창녕군의회에서 의결된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인

2024년 3월 28일

창녕군 조례 제2806호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설·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6조제2항제2호의 사업장 부지 매입 용자 지원을 받는 경우

제2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6호 생략

17.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제6조의2(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도지사는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도내 투자기업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2호 생략

3. 사업장 부지 매입비 용자 지원

4~5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용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3. 3. 30.>

1. 제6조의2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 매입 용자 지원을 받는 경우 <개정 2023. 3. 30.>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3. 30.>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2~7호 생략

조 례

창녕군의회에서 의결된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인

2024년 3월 28일

창녕군 조례 제2807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 을 “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로, “2년” 을 “1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란” 을 “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로, “2년” 을 “1년”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 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총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귀농어인·귀촌인 등에 대한 지원)” 을 “(귀농어·

귀촌 사업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귀농어인·귀촌인” 을 “귀농어인·귀촌인과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귀농어인 등의 소규모 거주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

제4조의 제목 “(귀농어인 등에 대한 지원 신청)” 을 “(지원 신청)” 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귀농어인 등에 대한 지원 여부의 결정)” 을 “(지원 여부의 결정)” 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귀농어인 등에 대한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를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귀농어·귀촌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귀농어인</u>” <u>이란</u>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u>2년</u> 이상 창녕군(이하 “<u>군</u>” 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 또는 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군에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p> <p>2. “<u>귀촌인</u>” <u>이란</u>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u>2년</u> 이상 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제1호 외의 목적으로 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p> <p><u><신 설></u></p> <p>제3조(<u>귀농어인 · 귀촌인 등에 대한 지원</u>) 창녕군수(이하 “<u>군수</u>” 라 한다)는 <u>귀농어인 · 귀촌인</u>(이하 “<u>귀농어인 등</u>” 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귀농어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p>	<p>제2조(정의) ----- -----.</p> <p>1. -----<u>이란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 ----- <u>1년</u> ----- -----.</p> <p>2. -----<u>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u> ----- ----- <u>1년</u> ----- ----- -----.</p> <p>3. “<u>귀농어 ·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u>” 이란 「<u>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총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u>귀농어 · 귀촌 사업 지원</u>) --- ----- ----- <u>귀농어인 · 귀촌인과 귀농어 ·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u>----- ----- ----- -----</p>

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8. (생략)

<신설>

9. (생략)

제4조(귀농어인 등에 대한 지원 신청) ①·② (생략)

제5조(귀농어인 등에 대한 지원 여부의 결정) (생략)

제6조(귀농어인 등에 대한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생략)

-----.

1. ~ 8. (현행과 같음)

9. 귀농어인 등의 소규모 거주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4조(지원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여부의 결정)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등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귀농어업인)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2.>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제3조(귀촌인)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2(귀농어업인·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교육을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의 영농·영어를 위한 기술·경영 교육
나.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에 필요한 교육
다. 그 밖에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교육

조 례

창녕군의회에서 의결된 창녕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인

2024년 3월 28일

창녕군 조례 제2808호

창녕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소양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유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 6조에 따른 창녕군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국가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 및 예비문화유산은 제외한다.
 - 가. 근현대 창녕을 배경으로 다수 군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 나. 창녕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는데 중요하거나 창녕을 알릴 수 있는 것
2. “창녕군 미래유산”이란 미래유산 중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창녕군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창녕군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그 밖에 정보 등을 기록하고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녕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창녕군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군수, 미래유산 업무 담당 국장,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역사·문화·예술·도시·건축 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8조(위원장 선임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창녕군 미래유산의 선정) ① 군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창녕군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창녕군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창녕군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창녕군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창녕군 미래유산 선정 취소)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창녕군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 및 예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우
4.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창녕군 미래유산 관리 운영 및 위탁) 군수는 군 소유 창녕군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게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단서, 제11조제3호 규정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 및 예비문화유산 관련 부분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국가유산법」

제13조(국가유산의 지정·등록) ①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유산 등으로 지정·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제14조(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 례

창녕군의회에서 의결된 창녕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인

2024년 3월 28일

창녕군 조례 제2809호

창녕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녕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창녕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창녕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으로,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를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로, “(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을 “(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③ 창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와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③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 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중 “별지 제3호서식” 을 “별지 제4호서식” 으로, “별지 제4호서식” 을 “별지 제5호서식” 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호서식” 을 “별지 제7호서식”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6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청구인명부 등 개인정보 보호)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②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수임자 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의회의”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 · 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10일”을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 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 · 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를 “의장은” 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조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제12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13조(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주민조

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

■ 창녕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input type="checkbox"/>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input type="checkbox"/>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input type="checkbox"/> 제정 <input type="checkbox"/> 개정 <input type="checkbox"/> 폐지 청구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청구이유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 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input type="checkbox"/> 이용신청 <input type="checkbox"/>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모든 대표자의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창녕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녕군의회회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 직인 </div>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창녕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청구인의 대표자 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

■ 창녕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채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채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창녕군의회의장 직인 </p>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창녕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 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창녕군 ○○읍·면(○책 중 ○권)

서명 주민 수 : 명

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서명부 활용요청 포함)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 “괄호()” 안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청구인명부는 시·군·자치구 또는 읍·면·동별로 별도로 철합니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창녕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 서식]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입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입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입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채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 창녕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 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이의대상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창녕군의회 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창녕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9호 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_____)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 철회를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모든 대표자의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녕군의회의회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 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 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창녕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u></p> <p>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창녕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u>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 라 한다)</u>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u>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 라 한다)</u>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u>창녕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u></p> <p>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이하 “의회” 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 -----(이하 “주민조례청구” 라 한다) -----.</p> <p>② <u>창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u></p> <p>③ <u>창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와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해야 한다.</u></p>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 ② (생략)

<신설>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신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제7조(청구인명부) ① -----
----- 별지 제7호서식-----
--.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6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의2(청구인명부 등 개인정보

보호)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②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수임자 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11조(보정기간) <신 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신 설>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10조(이의신청) ① -----

----- 별지 제8호 서식-----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
-----.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
· 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 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② -----
-----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
-----.

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
해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
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이 있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
월 이내

<신 설>

제13조(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
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
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
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
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
의가 있어야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
라야 한다.

<신 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
라야 한다.

1. 법 제2조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
음)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 · 홍보
· 지원 등 사무

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
구 등록 및 공개 사무

【관 련 법 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목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2. 17.] 제3조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 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2. 17.] 제12조

조 례

창녕군의회에서 의결된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녕 군 수 성 낙 인 인

2024년 3월 28일

창녕군 조례 제2810호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90만원” 을 “120만원” 으로, “20만원” 을 “30만원”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생 략)</p> <p>②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u>90만원</u>과 보조활동비 월 <u>20만원</u>으로 하여 창녕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p> <p>③ (생 략)</p>	<p>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120만원</u>----- - <u>30만원</u>----- -----.</p> <p>③ (현행과 같음)</p>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5조(의정비심의회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회는 그 의정비심의회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을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해당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조(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 상향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명된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기준에 관하여는 제71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제71조제7항제1호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창녕군 공고 제2024-511호

2023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과 관련된 전년도 재난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난 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재난 관리 실태를 공고합니다.

2023. 3. 28.

창녕군수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2023년도에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내용이 없었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1개과 27명으로 5년 평균 24명보다 3명 증가하였고, 지난해와 같습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9종으로 194개소에 설치되었으며, 5년 평균 168개소보다 26개소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8개소 증가하였습니다.
 - 재난담당공무원 전문교육 72명,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 훈련은 27명,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은 1,9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재난관리 언론 홍보로는 캠페인 등 현장홍보 8건,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사 19건을 보도하였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를 위해서 54,76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연도 확보 기준액은 441백만원이며, 441백만원 확보되어 100% 확보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 평균 388백만원 보다 53백만원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36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을 5년 평균 774백만원 사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00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477백만원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B등급으로 안전에 가까우며, 지난 진단결과(A등급)와 비교하여 1개 등급 감소하였습니다.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124개 내진 설계 대상 시설 중 99개 시설이 내진성능 확보 또는 내진보강 완료되어 79%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금년도의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은 4건 723백만원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지난해 보다 동일 건 43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군의 재난관리 역량은 안전관리 조직, 재난관리기금 적립, 내진보강율, 재난방지시설 점검·관리 등의 추진 실적이 우수하고, 재난관리자원 비축 및 장비·시설 인력 지정 등은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앞으로도 창녕군은 재난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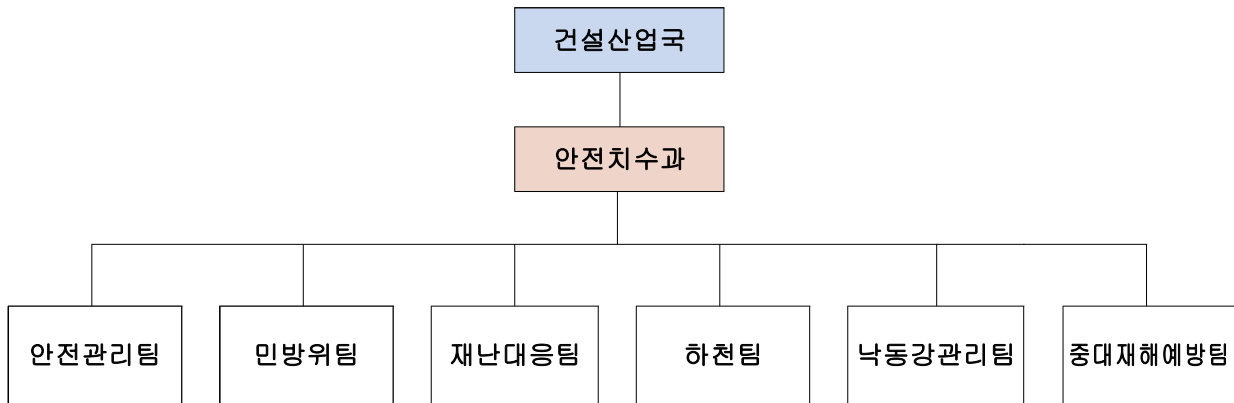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재난(피해) 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해당없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①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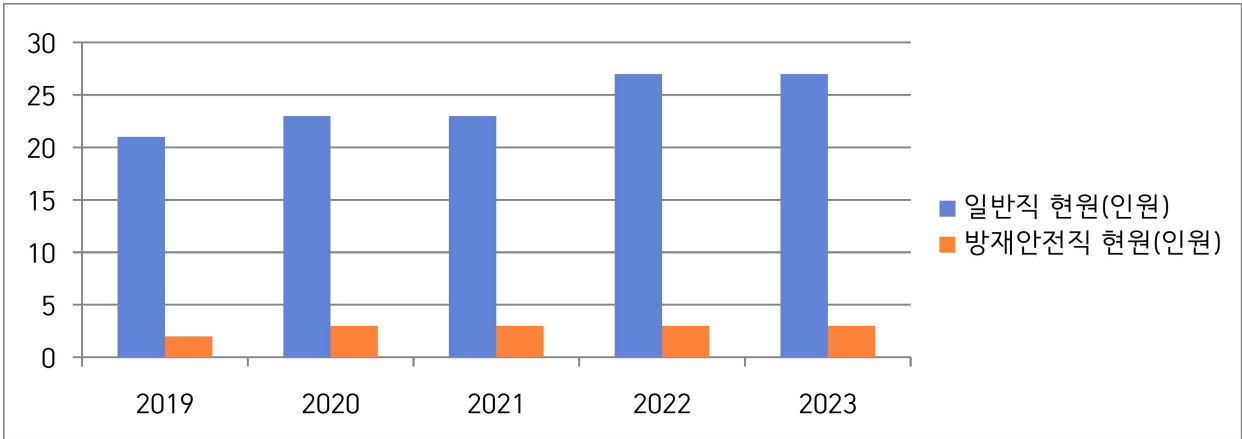
과 별	계	일 반 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26	26	-	1	8	10	6	1	-
	현원	27	25	-	1	5	9	6	4	2

다. 방재안전직 정·현원 현황

과 별	계	일 반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4	4	-	-	-	1	2	1
	현원	3	3	-	-	-	2	1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반직 현원(인원) * 방재안전직 포함	21	23	23	27	27
방재안전직 현원(인원)	2	3	3	3	3



☞ 구체적 내용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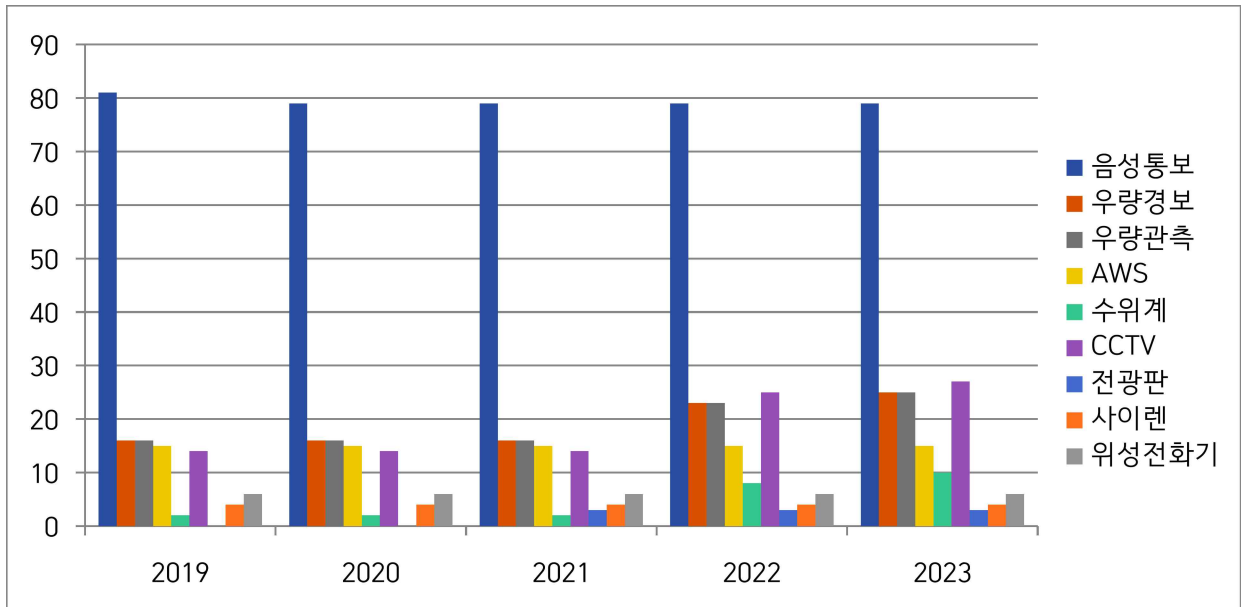
- 2022년 중대재해예방팀 신설로 인원 증가
- 전년도(2022년)와 변동사항 없음

②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가. 현황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79	창녕읍사무소 외 78개소
자동우량경보시설	25	자하곡매표소 외 24개소
자동우량관측장비	25	자하곡매표소 외 24개소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15	창녕읍사무소 외 14개소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9	남지읍 성사교 외 7개소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27	옥천리 산성교 외 26개소
재해문자전광판	3	창녕읍 2개소, 남지읍 1개소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4	창녕군청 외 3개소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	-
위성전화기	6	창녕군청
라디오 재해경보 방송	-	-
기타	-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자동음성통보시스템	81	79	79	79	79
자동우량경보시설	16	16	16	23	25
자동우량관측장비	16	16	16	23	25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15	15	15	15	15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2	2	2	8	10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14	14	14	25	27
재해문자전광판	-	-	3	3	3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4	4	4	4	4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	-	-	-	-
위성전화기	6	6	6	6	6
라디오 재해경보 방송	-	-	-	-	-
기타	-	-	-	-	-



☞ 구체적 내용설명

- 조기경보시스템 신규 설치(도천 말골)

③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가.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현황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지진해일 대비 실무과정	2023-01-28 ~ 2023-02-2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명	
안전점검 실무과정	2023-02-03 ~ 2023-02-07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명	
기후변화와 재난관리과정	2023-02-05 ~ 2023-02-06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명	
생활안전과정	2023-03-18 ~ 2023-03-22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근무자 사전교육 과정	2023-03-18 ~ 2023-03-22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명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과정	2023-04-04 ~ 2023-04-14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명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설계과정	2023-04-13 ~ 2023-04-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명	
재난안전실무자과정	2023-06-07 ~ 2023-06-09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0명	
재난안전관리자과정	2023-06-17 ~ 2023-06-19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5명	
제1기 홍수예보와 대응	2023-06-07 ~ 2023-06-2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명	
NDMS재난구호시스템과 모바일 재난관리포털의 이해	2023-06-29 ~ 2023-06-30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명	
재난안전실무자과정	2023-07-18 ~ 2023-07-20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0명	
재난안전실무자과정	2023-08-07 ~ 2023-08-09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5명	
재난안전관리자과정	2023-08-12 ~ 2023-08-13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명	
재난안전실무자과정	2023-09-04 ~ 2023-09-06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7명	
재난관리자원의운용및공동활용과정	2023-10-15 ~ 2023-10-20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명	
소규모공공시설관리과정	2023-10-20~ 2023-10-22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명	
재난안전실무자과정	2023-11-13~ 2023-11-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5명	
재해복구실무자과정	2023-11-13~ 2023-11-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명	
재난안전실무자과정	2023-12-04~ 2023-12-0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7명	
재난구호과정	2023-12-07~ 2023-12-13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3명	
재난관리자원의운용및공동활용과정	2023-12-02~ 2023-12-06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명	
2023 공직자 안보교육	2023-12-02~ 2023-12-09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명	
재난안전종사자의 임무와 역할과정	2023-12-07~ 2023-12-08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명	
재난안전종사자의 임무와 역할과정	2023-12-07~ 2023-12-08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명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과정	2023-12-02~ 2023-12-07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명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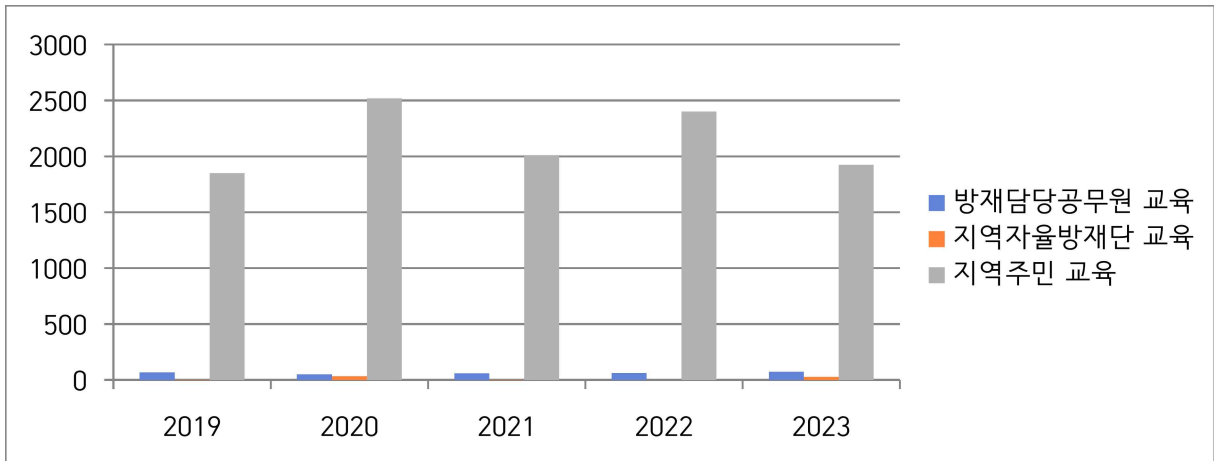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여름철 재난대응 자율방재단 워크숍	'23.7.6 ~7.7.	산청한방 가족호텔	2명	여름철 폭염, 풍수해 등 재난 대비 역량강화	경상남도	-
창녕군 자율방재단 직무능력강화 교육	'23.9.14.	창녕군 재난안전 상황실	23명	직무능력강화	창녕군	-
심리사회적 지지교육	'23.10.20.	경남 대한적십자협회	2명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	경상남도	-

[재난관리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농기계 순회 안전교육	'23.2월~1월	각 마을별	800명	찾아가는농기계 순회안전교육	창녕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진드기매개감염병홍보 캠페인	'23.6.5.~10.31	각 마을별	600명	진드기매개감염병홍보 캠페인 등	창녕군 보건소	
자살예방교육	'23.6월~9월	고암초, 명덕초, 창녕초	50명	자살예방교육	창녕군 보건소	
흡연예방교육	'23.11.27.	부곡중	41명	흡연예방교육	창녕군 보건소	
	'23.11.22.	이방초	20명			
	'23.10.23.	대지초	36명			
	'23.10.23.	자활센터	20명			
학교폭력예방교육	'23.4월~7월	관내중고등학교	100명	학교폭력예방교육	노인여성아동과	
군민안전교육	'23.11.27.	하강경로당	20명	생활안전교육	안전치수과	
	'23.11.27.	강리경로당	25명	생활안전교육	안전치수과	
	'23.11.28.	대성지역 아동센터	18명	교통안전교육	안전치수과	
	'23.11.28.	어린이집	30명	범죄안전교육	안전치수과	
	'23.12.01.	청소년 문화의집	20명	보건안전교육	안전치수과	
	'23.12.01.	어린이집	30명	범죄안전교육	안전치수과	
	'23.12.04.	어린이집	30명	범죄안전교육	안전치수과	
	'23.12.06.	명리지역 아동센터	20명	교통안전교육	안전치수과	
	'23.12.08.	대합면 주민자치센터	40명	자연재난안전교육	안전치수과	
	'23.12.13.	장애인근로사업장	25명	보건안전교육	안전치수과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69	51	60	61	72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2	32	3	-	27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1,850	2,518	2,010	2,400	1,925



☞ 구체적 내용설명

-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한 자율방재단 교육 증설
- 교육 홍보로 인한 방재담당공무원 교육 인원 증가

나.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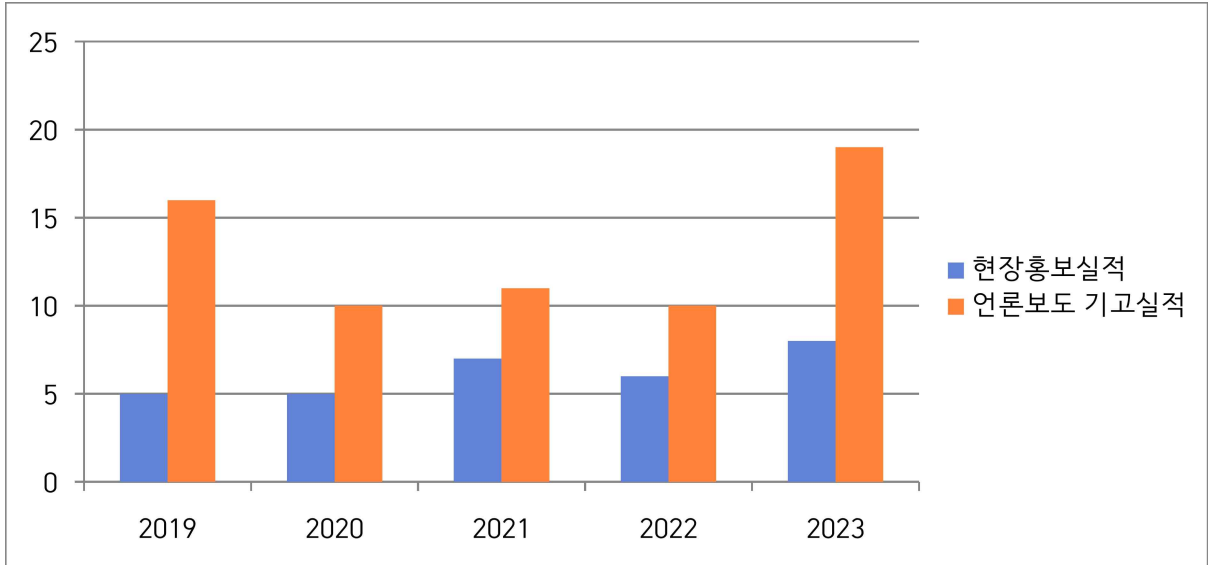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1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전한 설명절 보내기	2023.1.18.	창녕읍 전통시장	20	
2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전신고 활성화 홍보	2023.3.23.	창녕초 명덕초	20	
3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축제 안전사고 예방 홍보	2023.4.27.	남지읍 전통시장	15	
4	방재의 날 행사	방재의 날 맞이 재난 예방 홍보	2023. 5. 25.	14개읍면	285	
5	안전점검의 날 행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	2023.6.16.	창녕읍 옥천계곡	20	
6	안전점검의 날 행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	2023.8.3.	창녕읍 옥천계곡	20	
7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전신문고 집중신고기간 홍보	2023.9.22.	남지읍 전통시장	30	
8	안전점검의 날 행사	겨울철 재예방홍보	2023.9.22.	영산면 전통시장	30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 일시	언론사	비고
1	창녕군, 제62회3.1민속 문화제 현장점검 실시	창녕군, 경남도, 행안부 합동 안전점검	2023.2.23.	경남도민신문	
2	창녕군, 제18회 창녕낙동강유채축제 현장점검 실시	창녕군, 경남도, 행안부 합동 안전점검	2023.4.12.	국제뉴스	
3	창녕군, 소형 제설제 살포기 도입	소형 제설제 살포기 도입	2023.5.19.	경남도민신문	
4	창녕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도상 훈련 실시	여름철 자연재난 도상훈련	2023.6.20.	뉴시스	
5	창녕군, 장마전선 북상 대비 긴급회의 개최	장마전선 북상에 따른 대비	2023.6.26.	이뉴스투데이	
6	창녕군, 농촌 어른신께 무더운 여름을 대비하는 폭염 영향예보 제공	농촌 어른신 SMS 문자 서비스 제공	2023.7.5.	경남도민신문	
7	창녕군, '더울때 쉬어가세요!'	무더위쉼터 얼음물 제공	2023.7.11.	경남도민신문	
8	성낙인 창녕군수, 호우 대비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장점검	호우 대비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장점검 등 대비	2023.7.24.	아시아투데이	
9	창녕군 "재해 시 군민안전보험 혜택 받으세요"	국민안전보험 18개 항목 가입	2023.7.31.	뉴시스	
10	더우시죠? 시원한 얼음물 가지고 가세요!	창녕군 방문자 얼음물 제공	2023.7.31.	아시아경제	
11	창녕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나서	조현홍 부군수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2023.8.7.	경남도민신문	
12	창녕군, 역대급 폭염에 따른 총력 대응에 나선다	폭염 대비 종합계획 수립	2023.8.7.	경남도민신문	
13	창녕양파가요제 현장점검 실시	창녕군, 경남도, 합동안전점검	2023.9.8.	뉴스프리존	
14	창녕군, 2023년 지역자율방재단 직무능력강화 교육 실시	자율방재단 직무능력강화 교육 실시	2023.9.15.	뉴스프리존	
15	창녕군, 추석연휴 및 가을철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시	안전문화운동 합동 캠페인	2023.9.22.	뉴스쉐어	
16	창녕군, 제37회 비사벌문화제 현장점검 실시	창녕군, 경남도, 합동안전점검	2023.10.12.	뉴스프리존	
17	창녕군,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023.10.30.	경상도민신문	
18	창녕군, 제17회 비사벌문화제 현장점검 실시	창녕군 자체 안전점검	2023.11.4.	뉴스프리존	
19	창녕군, 겨울철 화재예방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시	안전문화운동 합동 캠페인	2023.12.15.	경남포커스뉴스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현장홍보실적(횟수)	5	5	7	6	8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16	10	11	10	19



☞ 구체적 내용설명

-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군정 행사, 활동 등 증가

④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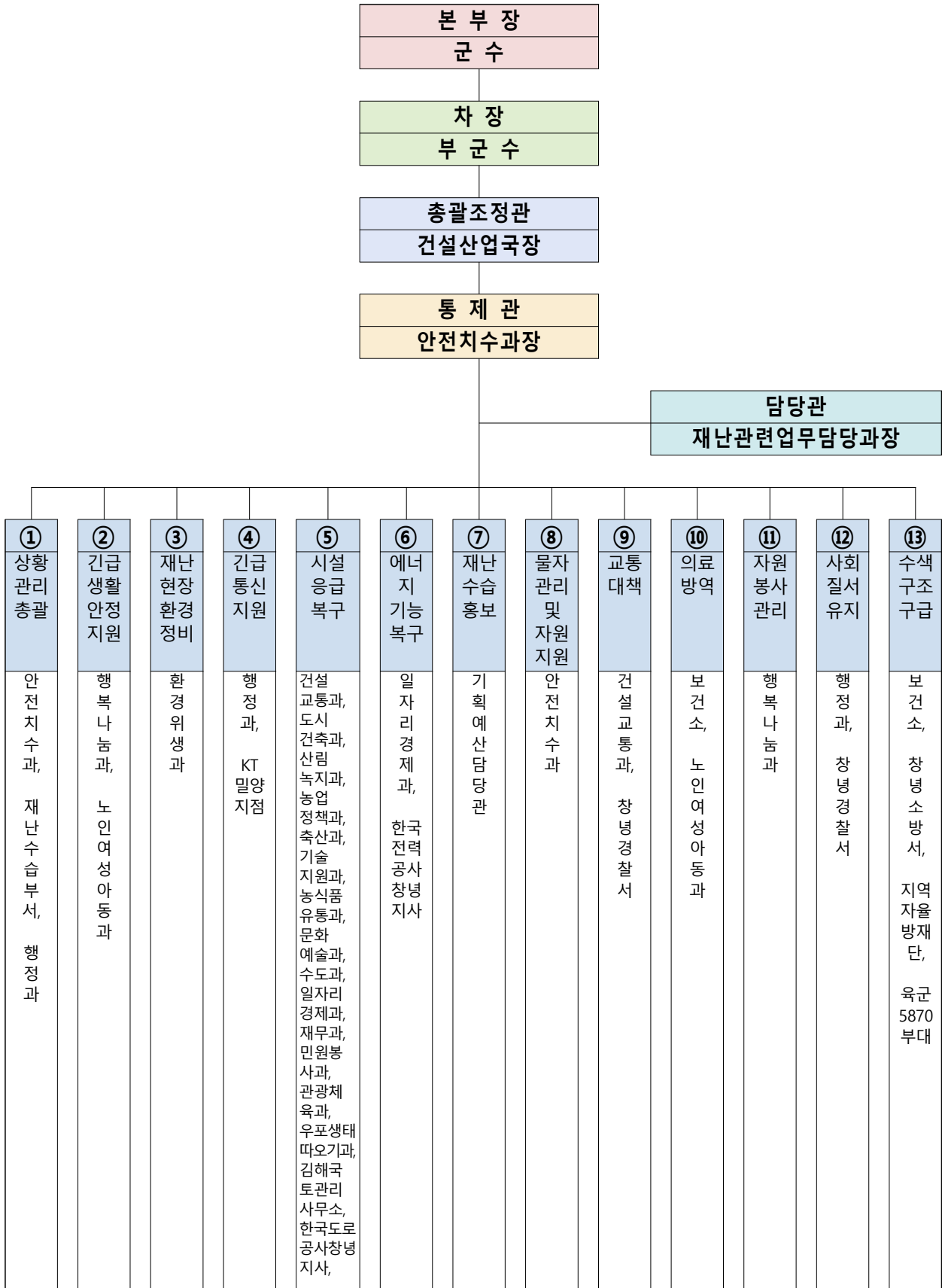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시장·군수·구청장 • 위원 : 18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 •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실무 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부군수 • 위원 : 18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 •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본부장: 군수 • 지역차장: 부군수 • 통제관: 안전치수과장 • 담당관(해당 재난 관련 부서장) 및 실무반(해당재난 관련 담당공무원, 재난관련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장 비상시: 건설산업국장 상 시: 안전치수과장 • 상황반원 주간: 안전치수과 직원 야간: 당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안전행정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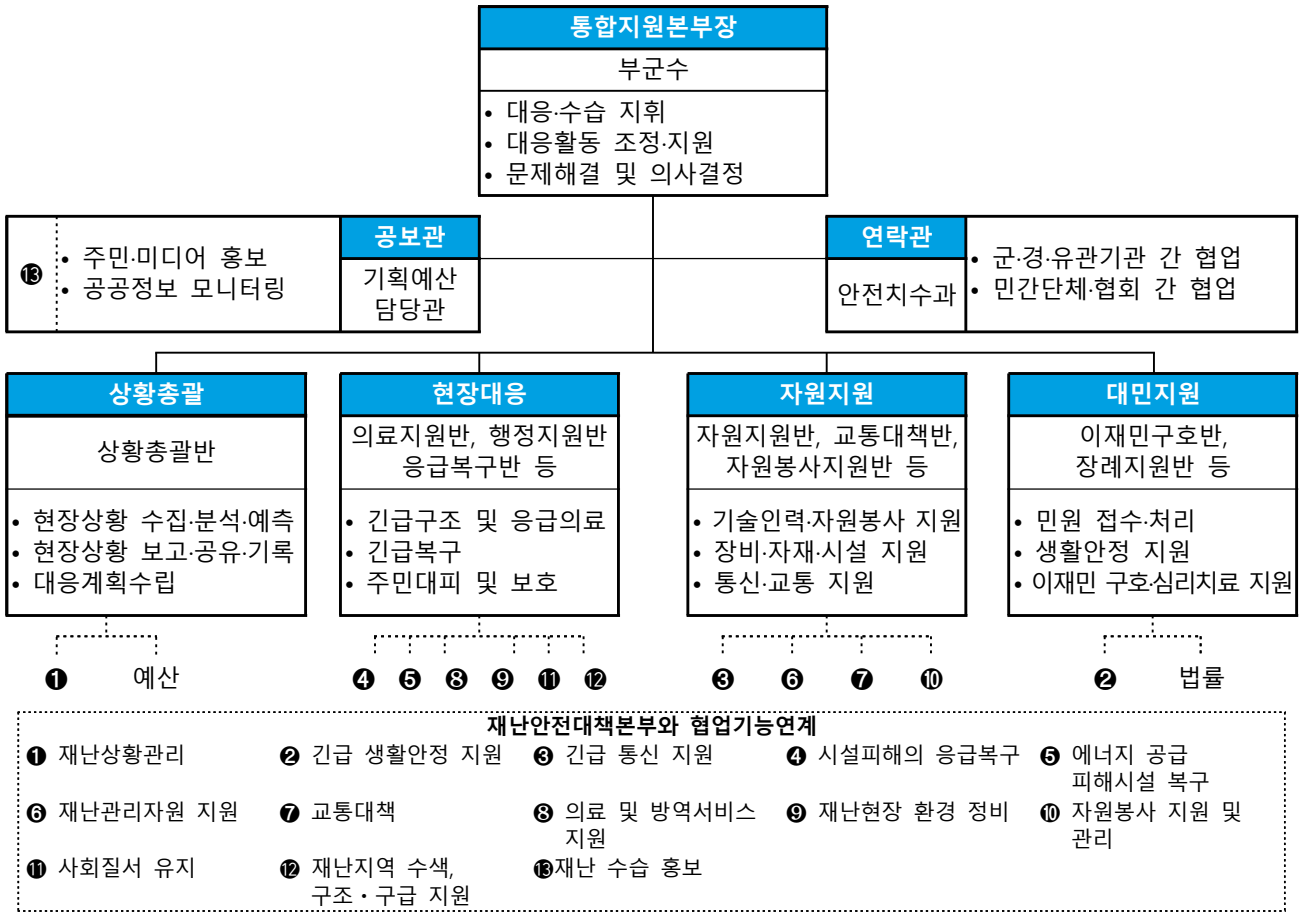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안전치수과, 재난수습부서, 행정과)
 -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행복나눔과, 노인여성아동과)
 -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환경위생과)
 - *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행정과, KT밀양지점)
 -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식품유통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수도과, 민원봉사과, 우포생태따오기과, 김해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창녕지사,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일자리경제과, 한국전력공사 창녕지사)
 -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기획예산담당관)
 -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 상태 유지(안전치수과)
 -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건설교통과, 창녕경찰서)
 -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보건소)
 -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행복나눔과)
 -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행정과, 창녕경찰서)
 -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창녕소방서, 보건소, 육군 제5870부대 2대대)
 -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나) 재난현장 안전관리체계

○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구성



재난현장 지휘 및 협업체계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기 관	임무 및 역할	담당자	전화번호
창녕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 및 방범 활동 · 사고원인 조사 참여 및 방화(테러) 용의자 검거 · 교통 통제 및 해제 지원(출입 제2통제선 설치) · 인명구조 및 복구 인력·장비 지원 · 주민 긴급대피 지원 · 사망자 신원 확인 	김가영 (경장)	520-9257
창녕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구조·구급, 화재진압 등 초개대응활동 전개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긴급구조활동 지휘·통제 · 긴급구조구급 장비 동원 및 물자 관리 · 출입 제1통제선 설치 · 의용소방대 동원 · 피해시설 사고원인 조사 참여 	박신철 (소방위)	259-9263
창녕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수용시설 및 긴급 대피시설 관리 ·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표미나 (주무관)	530-3586
육군 제5870부대2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구조 및 복구 인력·장비 지원 · 시설물 안전진단 기술 지원 	천진웅 (대위)	353-5153
KT 창원지사(밀양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통신 지원 · 이동전화차량 현장 배치 · 응급복구 인력·장비 지원(통신) · 소방서 등과 협조하여 통신 라이프라인 피해 최소화 · 피해시설 사고원인 조사 참여 	강진호 (차장)	232-1111
한국전력공사 창녕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지역 단전조치 · 사고수습 및 전력공급(조명, 동력 등) · 응급복구 인력·장비 지원(전력) · 피해 주민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추진 · 피해시설 사고원인 조사 참여 	조하영 (대리)	530-3233
창녕군 자원봉사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에 대한 구호사업 [적십자사봉사회 경남창녕지구협의회] (이동취사차량을 활용한 이재민 급식봉사, 적십자 구호봉사센터 설치 및 구호물품 공급) · 각종 자원봉사자 관리업무[창녕군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자 동원, 재난지역에 자원봉사자 배정 지원, 공공근로 및 기술지원) · 피해시설 응급복구 지원[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 재난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창녕군 주민방위기동대] 	조점순 (회장)	530-1148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시설 피해현황 파악 및 응급 복구실시 	정기태 (과장)	530-7723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통합지휘본부 설치 요건·시기 및 구성과 임무 규정 -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 확립 - 복구체계로 전환 시 인력 및 장비 재배치	2014.08.14. 2020.12.28. (개정)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건·시기 및 구성과 임무 규정 등	2005.07.01. 2023.12.28. (개정)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해당없음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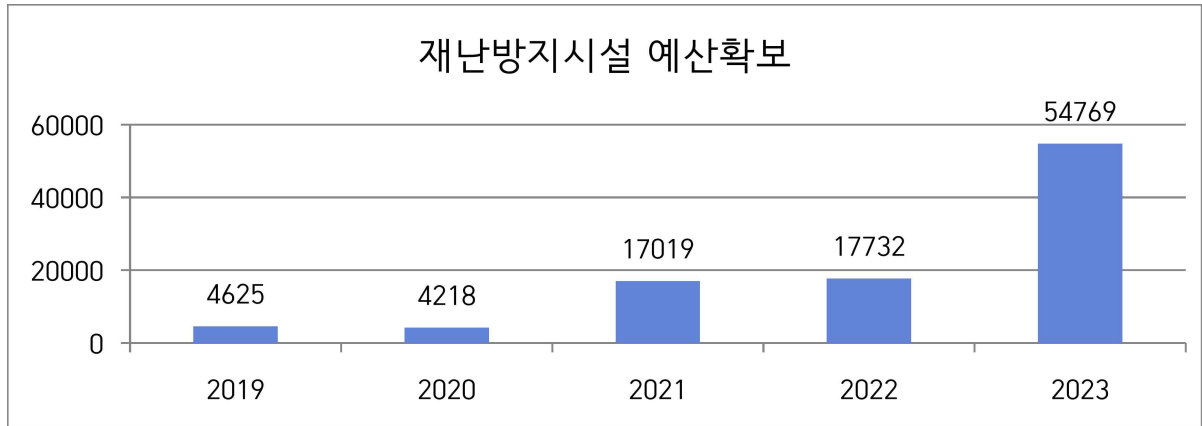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수리시설 개보수	성산 연당소류지 외 70개소	용배수로 및 관정 등 개보수	2023. 1. ~2023. 12.	3,176	재해예방
양배수장 개보수	대합 신당양수장 외 8개소	양배수장 노후시설 개보수 등	2023. 1. ~2023. 12.	400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도천 말골저수지 외 13개소	저소류지 안전진단, 개보수 등	2023. 1. ~2023. 12.	200	재해예방
급경사지	창녕옥천비들 지구 급경사지 외 1개소	급경사지 정비사업	2023. 1. ~2023. 12.	500	재해예방
기술진단 개선사업	모산마을 하수처리시설 외 3개소	하수처리시설 개선	2023. 6. ~2023. 12.	183	재해예방
도천 덕곡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천면 덕곡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021. 3. ~2023. 12.	11,317	재해예방
도천 송진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천면 송진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021. 2. ~2023. 9.	5,477	재해예방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이방 옥야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방면 송곡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022. 12. ~2023. 8.	1,111	재해예방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창녕군청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 및 관리	2023. 1. ~2023. 12.	9.5	재해예방
재해감시시스템 (OCTV) 유지보수	남지리 남지철교 외 13개소	재해감시시스템 유지 및 관리	2023. 1. ~2023. 12.	16.5	재해예방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하천5개소) 유지보수	길곡면 신덕지구 외 4개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2023. 1. ~2023. 12.	5.8	재해예방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산간계곡 및 저수지) 유지보수	창녕읍 자하곡 매표소 외 24개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2023. 1. ~2023. 12.	22	재해예방
재해관측시스템 유지보수	창녕읍 사무소 외 15개소	AWS 강우량계 유지 및 관리	2023. 1. ~2023. 12.	22	재해예방
재난방송시스템 (읍면, 마을) 유지보수	창녕읍 옥천계곡 외 78개소	재난방송시스템 유지 및 관리	2023. 1. ~2023. 12.	22	재해예방
창녕 한산소하천 정비사업	창녕읍 신촌리	소하천정비 L=1.8km	2020. 04. 20. ~2024. 06. 03.	7,393	축제 및 호안정비
계성 명리소하천 정비사업	계성면 명리	소하천정비 L=1.99km	2022. 06. 08. ~2025. 09. 16.	3,864	축제 및 호안정비
계성 광계소하천 정비사업	계성면 광계리~ 장마면 강리	소하천정비 L=2.04km	2022. 07. 04. ~2025. 10. 12.	8,250	축제 및 호안정비
창녕천 지류하천 (교리천~대 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창녕읍 술정리	하천정비 L=0.78km	2023. 06. 09. ~2026. 06. 07.	12,500	하천정비
영산천 (우강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도천면 우강리	하천정비 L=0.13km	2023. 07. 12. ~2024. 03. 31.	300	호안정비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4,625	4,218	17,019	17,732	54,769



☞ 구체적 내용설명

- 전년도 재난방지시설 누락분 발굴로 예산 증가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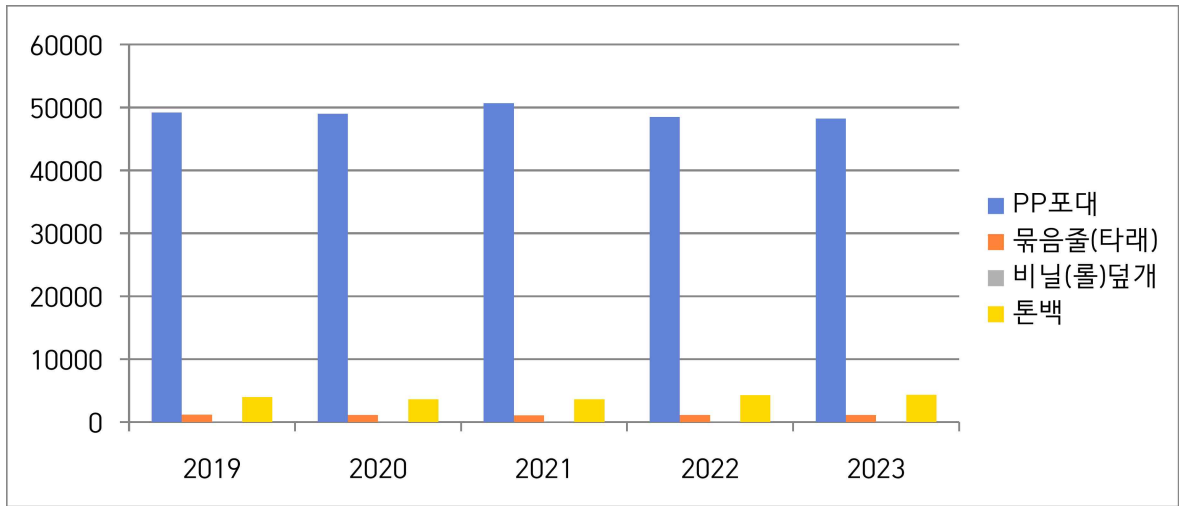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장 비 병			
	PP포대	묶음줄(타래)	비닐(롤)덮개	톤백
총계	48,496	1,094	131	4,252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방재물자 종류별	2019	2020	2021	2022	2023
PP포대	49,191	48,991	50,691	48,496	48,216
묶음줄(타래)	1,152	1,129	1,079	1,094	1,087
비닐(롤)덮개	136	129	132	131	135
톤백	3,981	3,635	3,635	4,252	4,341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풍수해 예방 및 대응 상황 시 방재물자 사용
- 톤백 등 추가 구매

[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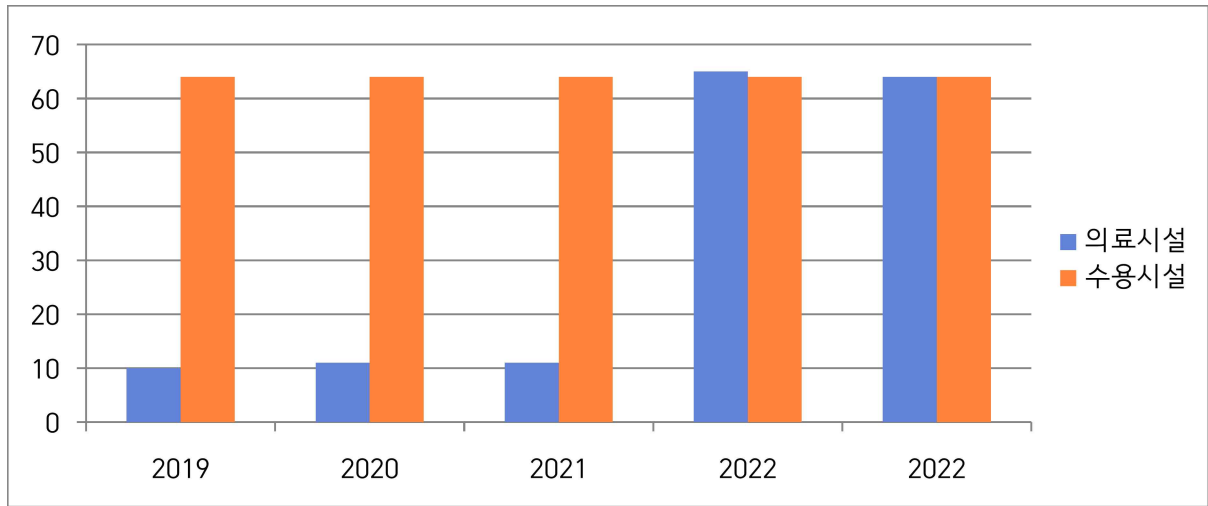
구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계	64	106	203	14	2,488	7
병원	11	38	177	6	2,405	6
보건소	1	23	22	2	-	-
기타	52(의원)	45(의원)	4(의원)	6(소방서)	83(의원)	1 (창녕군공설장례식장)

[수용시설]

구분	합계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64	9,205	17	4,333	40	2,007	4	194	1	255	2	2,416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의료시설수		10	11	11	65	64
수용시설	개소	64	64	64	64	64
	수용인원	24,179	24,179	24,179	9,894	9,205



☞ 구체적 내용설명

- 수용시설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상 기준 면적의 수용인원 현행화
- 나. 장비 지정

[구조장비]

구분	선박(척)			구명복 (벌)	구조망 (조)	구급차 (대)	로프 (m)	무전기 (점)
	계	지도선	구명보트					
창녕군	3	-	3	39	-	6	1,000	153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굴삭기	불도저	덤프
총계	52	-	31	-	21

[산불진화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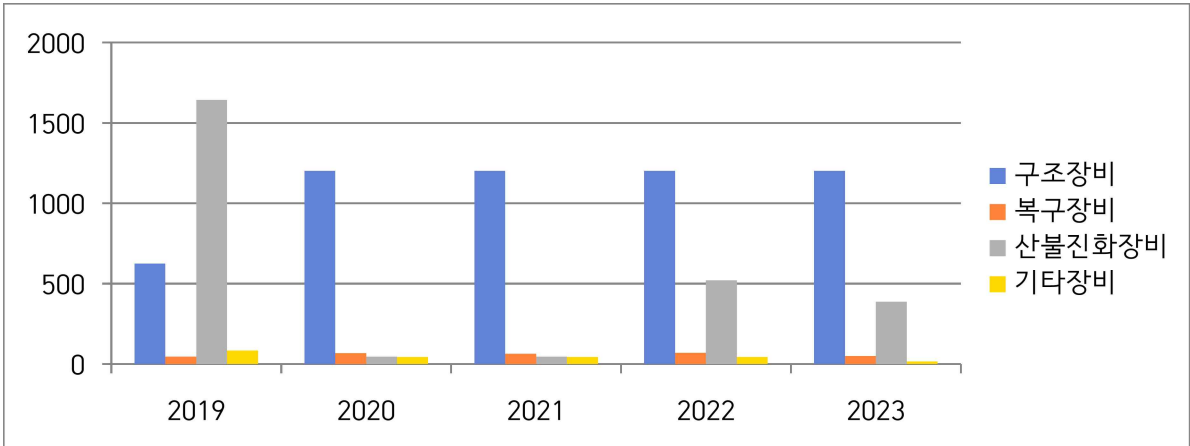
구분	계	헬기보유	헬기임차	산불진화차	동력펌프	등짐펌프
총계	387	-	1	8	8	370

[기타장비]

구분	계	양수기	발전기	기타
총계	16	11	5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구조장비	624	1,201	1,201	1,201	1,201
복구장비	46	67	63	69	50
산불진화장비	1,644	46	46	520	387
기타장비	84	44	44	44	16



☞ 구체적 내용설명

- 장비 사용, 사용 기한 초과 등으로 인한 현행화

다. 인력 지정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전기	가스	통신	화공
인원	30	10	5	8	1	4	2

[기능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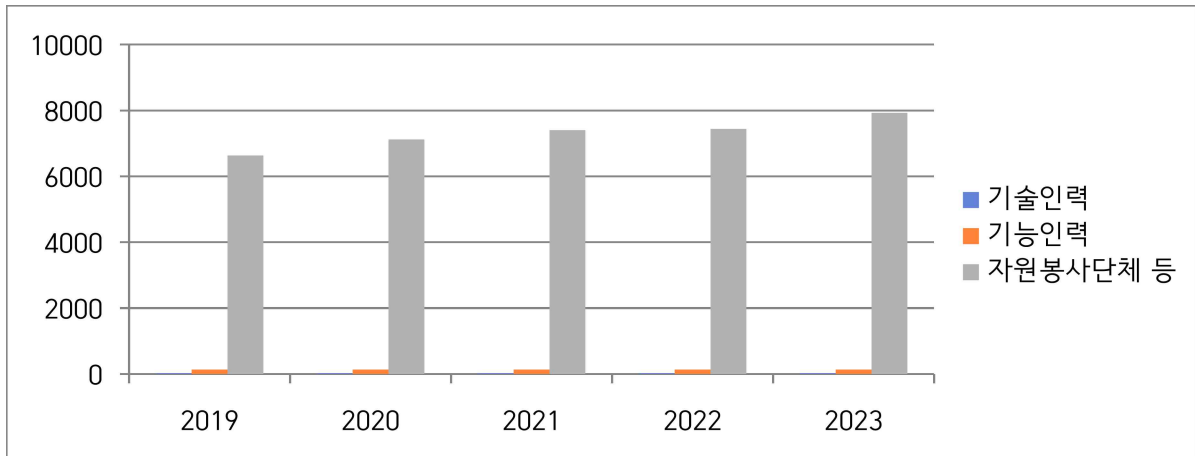
구분	계	전기공	통신공	중기운전	용접공	기타
인원	138	14	1	119	2	2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소방대	산악구조대	수중구조대	아마추어무선봉사대	기타	적십자봉사대	새마을부녀회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인원	7,930	638	-	-	-	285	200	290	200	20	6,297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기술인력	30	30	30	30	30
기능인력	138	138	138	138	138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6,633	7,117	7,405	7,440	7,930



☞ 구체적 내용설명

- 자원봉사단체 등 관내 인력수 현행화

⑧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하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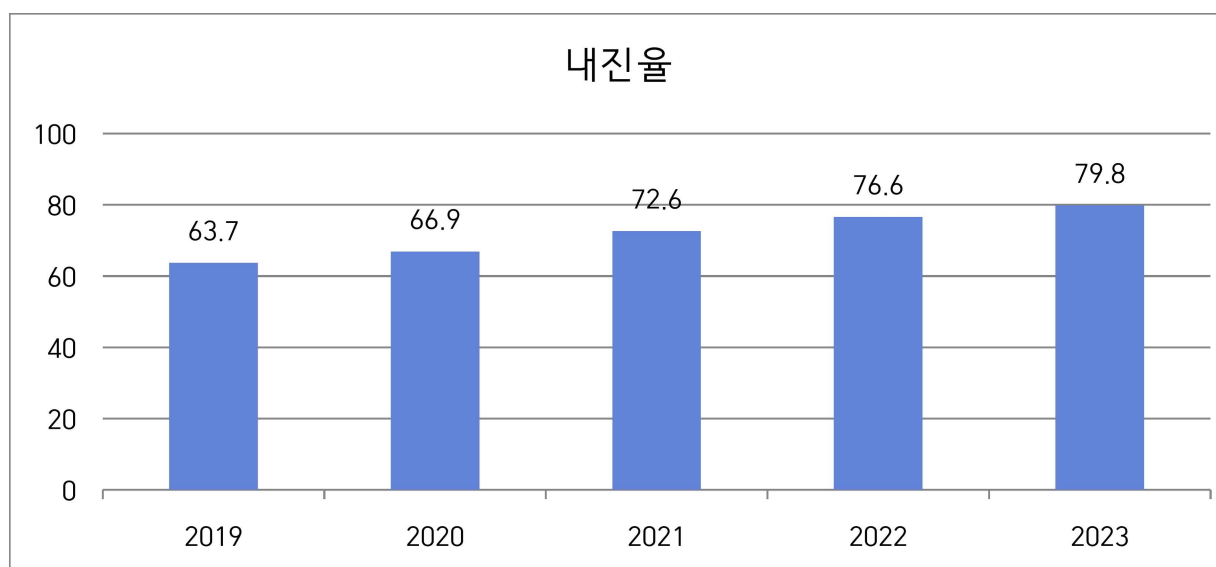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2023년 재난관리평가	'23.5.25.	행정안전부	보통	
여름철 수상안전 관리 추진실적	2023. 9. 4. ~ 9. 18.	행정안전부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2023. 6. 7.	행정안전부	보통	
지방하천정비 평가	2023. 11. 28.	경상남도	우수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20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 × 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공공건축물	75	51	4	723	68.0%
도로시설물	28	28	-	-	100.0%
산업단지공공 폐수처리시설	1	1	-	-	100.0%
수도시설	9	8	-	-	88.9%
폐기물 매립시설	6	6	-	-	100.0%
공공하수 처리시설	5	5	-	-	100.0%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내진율	63.7%	66.9%	72.6%	76.6%	79.8%



☞ 구체적 내용설명

- 지속적인 내진보강사업 실시로 내진율 증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집행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집행 현황]

가.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당해 연도 확보 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441백만원	441백만원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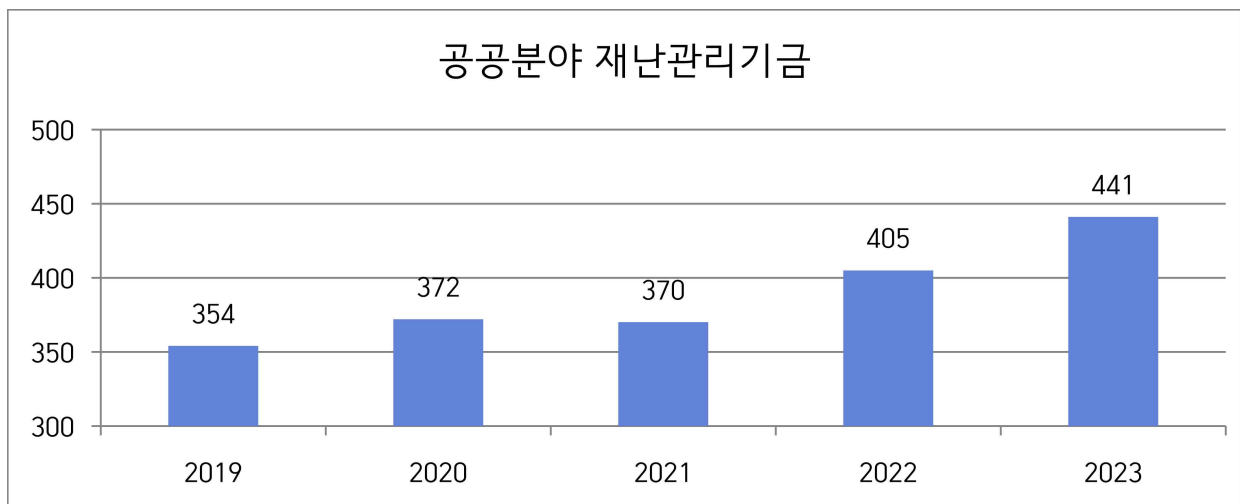
나. 누적 기준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누적 확보 기준액(①)	누적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5,446백만원	5,446백만원	10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확보액 (당해연도)		354	372	370	405	441
사 용 액	합 계	170	2,476	305	223	700
	공공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7	2,269	67	-	-
	공공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163	207	238	223	700



☞ 구체적 내용설명

- 군 전출금 등 공공분야 재난관리기금 증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작성·운영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통합본	안전치수과	2018	재난유형별 예방, 대비, 수습, 복구 대처 방안
풍수해	안전치수과	2018	
지진	안전치수과	2018	
대형화산폭발	안전치수과	2014	
가뭄	안전치수과	2015	
조류대발생(녹조)	환경위생과	2014	
산사태	산림녹지과	2014	
낙뢰	안전치수과	2020	
한파	안전치수과	2019	
폭염	안전치수과	2019	
산불	산림녹지과	2017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	환경위생과	2013	
대규모 수질 오염	환경위생과	2016	
댐 붕괴	안전치수과	2017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안전치수과	2017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	일자리경제과	2017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도시건축과	2018	
가축 질병	축산과	2013	
감염병 재난	보건정책과	2013	
전력 사고	일자리경제과	2015	
보건의료 사고	보건정책과	2015	
식용수 사고	수도과	2015	
육상 화물 운송 사고	건설교통과	2014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예술과	2020	
초미세먼지	환경위생과	2020	
가스	일자리경제과	2017	
위험물 사고	안전치수과	2019	
저수지 붕괴	건설교통과	2015	
문화재	문화예술과	2018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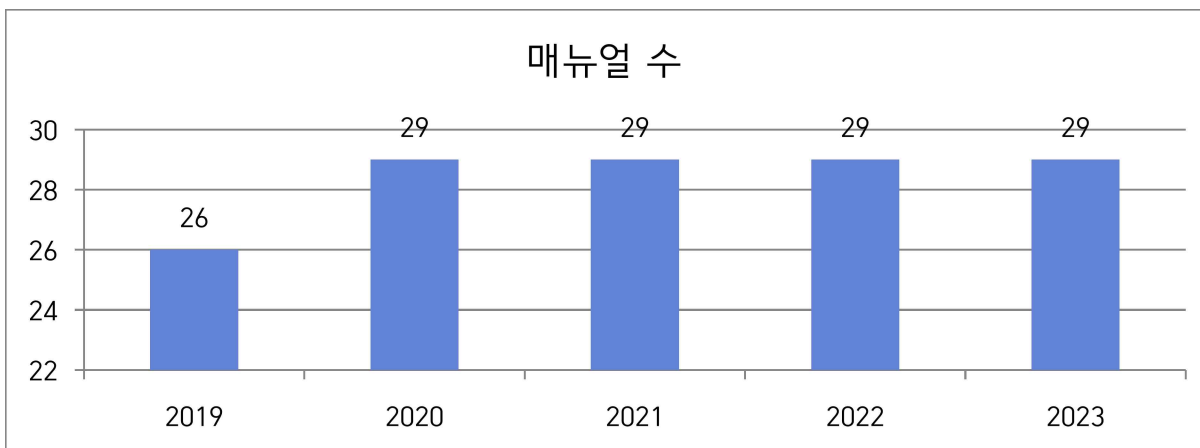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통합본	2023-11-01	상급기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 및 연락처 현행화	
풍수해	2023-07-18		
지진	2023-08-07		
대형화산폭발	2023-08-07		
가뭄	2023-08-17		
조류대발생(녹조)	2023-08-21		
산사태	2023-08-17		
낙뢰	2023-07-18		
한파	2023-07-31		
폭염	2023-07-31		
산불	2023-08-17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	2023-08-21		
대규모 수질 오염	2023-08-21		
댐 붕괴	2023-10-05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2023-08-01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	2023-08-16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2023-08-13		
가축 질병	2023-08-29		
감염병 재난	2023-08-14		
전력 사고	2023-08-11		
보건의료 사고	2023-08-25		
식용수 사고	2023-10-04		
육상 화물 운송 사고	2023-07-28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2023-10-30		
초미세먼지	2023-07-28		
가스	2023-10-05		
위험물 사고	2023-10-05		
저수지 붕괴	2023-10-05		
문화재	2023-08-18		

[시군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식용수 사고	2023-06-26	유독물 방재훈련	훈련실시로 인한 매뉴얼 숙지 및 재난대응 숙련도 향상	
문화재	2023-06-07	문화재 재난대응 가상훈련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2023-06-30	공연장 화재발생 가상훈련		
풍수해	2023-06-19	피해발생에 따른 협업부서별 대체사항 점검		
보건의료 사고	2023-10-27	건물붕괴 및 화재 발생 대응 현장응급 의료소 운영		
식용수 사고	2023-11-20	유독물 방재훈련		
지진	2023-10-27	안전한국훈련 연계 지진대피훈련		
한파	2023-10-19	한파 및 폭설 대비 유관기관 합동 도로 제설 훈련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2023-10-30	옥내소화전 및 심폐소생술 실습		
산불	2023-11-13	산불 진화교육		
산불	2023-11-14	산불 방화선 구축 및 기계화 시스템 교육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매뉴얼 수	26	29	29	29	29



5)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등급]

구 분	재해위험요인	예방대책추진	예방시설정비	종합등급
진단결과	E	A	B	B

* (안전) A등급 <-----> E등급 (위험)

※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 자연재해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진단반의 지자체 실적 확인을 통해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지역의 안전한 정도를 진단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목적

- 시·군·구별 피해발생빈도, 피해규모 및 피해저감능력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의 재해취약요소를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써
- 방재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및 지자체 자율방재역량 제고를 위해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실시

※ 분야별 진단방법

- 재해위험요인 : 재해발생 빈도, 사회적·지역적 취약성 진단
- 예방대책추진 : 방재대책에 관한 계획·정책 수립 추진 등 행정적 예방 안전도 진단
- 예방시설정비 : 재난예방시설 설치 확대 및 유지관리 등 구조적 안전도 진단

◇ 연도별 등급 비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등 급	-	B	-	A	B

☞ 구체적 내용설명

- 2023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B등급으로 진단
- 2019년 모의진단 실시, 2021년 코로나19 대응으로 미실시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창녕군 건설산업국 안전치수과 (담당자 : 김준근, 전화 : 055)530-1835)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공고 제2024-565호

길곡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길곡2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창 녕 군 수

1. 사 업 명: 길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창녕군수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길곡2지구: 251필, 249,685㎡
4. 지적확정조서: 별도첨부
5. 공람기간: 2024. 3. 26.~2024. 4. 9.(14일간)
6. 공람장소: 창녕군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7. 공람 비치서류: 별도첨부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8. 문의처: 창녕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55-530-1393)

길곡2지구지적확정 조서

번호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증가(m ²)	감소(m ²)	성명	
1	길곡면	길곡리	150-1	전	142.0	길곡면	길곡리	150-1	전	142.0	0.0	0.0	신*우	
2	길곡면	길곡리	150-2	전	446.0	길곡면	길곡리	150-2	전	446.0	0.0	0.0	신*희	
3	길곡면	길곡리	151	전	2,231.0	길곡면	길곡리	151	전	2,191.9	0.0	39.1	신*돈	
4	길곡면	길곡리	152	대	734.0	길곡면	길곡리	152	대	734.0	0.0	0.0	신*돈	
5	길곡면	길곡리	153	대	605.0	길곡면	길곡리	153	대	605.0	0.0	0.0	정*부	
6	길곡면	길곡리	155	대	565.0	길곡면	길곡리	155	대	565.0	0.0	0.0	김*수	
7	길곡면	길곡리	156	임야	545.0	길곡면	길곡리	156	임야	545.0	0.0	0.0	조*선	
8	길곡면	길곡리	157-1	임야	1,203.0	길곡면	길곡리	157-1	임야	1,203.0	0.0	0.0	신*순	
9	길곡면	길곡리	157-2	대	694.0	길곡면	길곡리	157-2	대	694.0	0.0	0.0	신*순	
10	길곡면	길곡리	157-3	대	172.0	길곡면	길곡리	157-3	대	140.2	0.0	31.8	신*순	
11	길곡면	길곡리	158	전	852.0	길곡면	길곡리	158	전	795.0	0.0	57.0	신*홍	
12	길곡면	길곡리	158-1	목장용지	60.0	길곡면	길곡리	158-1	목장용지	60.0	0.0	0.0	신*순	
13	길곡면	길곡리	159	대	1,025.0	길곡면	길곡리	159	대	1,025.0	0.0	0.0	신*천	
14	길곡면	길곡리	159-1	전	1,188.0	길곡면	길곡리	159-1	전	1,181.6	0.0	6.4	신*천	
15	길곡면	길곡리	160	답	74.0	길곡면	길곡리	160	답	74.0	0.0	0.0	이*훈	
16	길곡면	길곡리	161	대	456.0	길곡면	길곡리	161	대	327.2	0.0	81.0	이*훈	
								161-1	대	47.8				
17	길곡면	길곡리	162	대	403.0	길곡면	길곡리	162	대	379.4	0.0	23.6	김*연	
18	길곡면	길곡리	163	대	826.0	길곡면	길곡리	163	대	791.7	0.0	34.3	신*민	
19	길곡면	길곡리	164	대	29.0	-	-	-	-	말소	0.0	29.0	박*희(외1명)	
20	길곡면	길곡리	164-1	대	245.0	길곡면	길곡리	164-1	대	212.4	0.0	32.6	윤*본	
21	길곡면	길곡리	165	대	415.0	길곡면	길곡리	165	대	415.0	0.0	0.0	박*희	
22	길곡면	길곡리	166	대	248.0	길곡면	길곡리	166	대	248.0	0.0	0.0	이*석	
23	길곡면	길곡리	167-1	전	70.0	길곡면	길곡리	167-1	전	70.0	0.0	0.0	박*희	
24	길곡면	길곡리	167-3	전	154.0	길곡면	길곡리	167-3	전	154.0	0.0	0.0	신*범	
25	길곡면	길곡리	167-4	전	785.0	길곡면	길곡리	167-4	전	785.0	0.0	0.0	이*중	
26	길곡면	길곡리	168	전	1,583.0	길곡면	길곡리	168	전	1,347.8	0.0	235.2	황*순	
27	길곡면	길곡리	168-1	대	856.0	길곡면	길곡리	168-1	대	856.0	0.0	0.0	박*희(외1명)	
28	길곡면	길곡리	168-3	전	2,450.0	길곡면	길곡리	168-3	전	2,450.0	0.0	0.0	황*순	
29	길곡면	길곡리	169	목장용지	660.0	길곡면	길곡리	169	목장용지	678.3	18.3	0.0	신*홍	
30	길곡면	길곡리	169-1	목장용지	660.0	길곡면	길곡리	169-1	목장용지	660.0	0.0	0.0	신*홍	
31	길곡면	길곡리	169-2	목장용지	495.0	길곡면	길곡리	169-2	목장용지	412.3	0.0	82.7	신*홍	

32	길곡면	길곡리	169-3	전	1,061.0	길곡면	길곡리	169-3	전	1,061.0	0.0	0.0	신*홍	
33	길곡면	길곡리	171	답	506.0	길곡면	길곡리	171	답	506.0	0.0	0.0	신*홍(외1명)	
34	길곡면	길곡리	172	전	592.0	길곡면	길곡리	172	전	592.0	0.0	0.0	김*우	
35	길곡면	길곡리	173	답	512.0	길곡면	길곡리	173	답	512.0	0.0	0.0	신*기	
36	길곡면	길곡리	174	전	1,269.0	길곡면	길곡리	174	전	1,235.2	0.0	33.8	신*지	
37	길곡면	길곡리	175	대	339.0	길곡면	길곡리	175	대	439.5	100.5	0.0	이*영	
38	길곡면	길곡리	175-1	답	395.0	길곡면	길곡리	175-1	답	267.5	0.0	127.5	이*영	
39	길곡면	길곡리	176	전	1,679.0	길곡면	길곡리	176	전	1,592.4	0.0	86.6	김*식(외1명)	
40	길곡면	길곡리	177	임야	2,142.0	길곡면	길곡리	177	임야	2,072.0	0.0	70.0	신*철(외1명)	
41	길곡면	길곡리	178	묘지	546.0	길곡면	길곡리	178	묘지	532.1	0.0	13.9	신*기	
42	길곡면	길곡리	178-1	묘지	99.0	길곡면	길곡리	178-1	묘지	99.0	0.0	0.0	신*기	
43	길곡면	길곡리	179-1	전	2,065.0	길곡면	길곡리	179-1	전	2,010.0	0.0	55.0	박*이	
44	길곡면	길곡리	179-2	전	1,891.0	길곡면	길곡리	179-2	전	1,870.5	0.0	20.5	김*화(외1명)	
45	길곡면	길곡리	179-3	전	2,030.0	길곡면	길곡리	179-3	전	2,030.0	0.0	0.0	신*도	
46	길곡면	길곡리	179-4	전	233.0	길곡면	길곡리	179-4	전	233.0	0.0	0.0	신*기	
47	길곡면	길곡리	180	대	330.0	길곡면	길곡리	180	대	358.4	28.4	0.0	윤*성	
48	길곡면	길곡리	180-1	대	661.0	길곡면	길곡리	180-1	대	625.8	0.0	35.2	이*우	
49	길곡면	길곡리	180-2	전	444.0	길곡면	길곡리	180-2	전	431.0	0.0	13.0	윤*성	
50	길곡면	길곡리	181	전	886.0	길곡면	길곡리	181	전	867.2	0.0	18.8	김*진	
51	길곡면	길곡리	181-2	전	377.0	길곡면	길곡리	181-2	전	377.0	0.0	0.0	윤*성	
52	길곡면	길곡리	181-3	전	3,819.0	길곡면	길곡리	181-3	전	3,799.3	0.0	19.7	신*욱	
53	길곡면	길곡리	181-4	대	990.0	길곡면	길곡리	181-4	대	990.0	0.0	0.0	박*자	
54	길곡면	길곡리	181-5	전	181.0	길곡면	길곡리	181-5	전	126.1	0.0	54.9	박*자	
55	길곡면	길곡리	181-7	전	151.0	길곡면	길곡리	181-7	전	151.0	0.0	0.0	박*자	
56	길곡면	길곡리	181-8	대	600.0	길곡면	길곡리	181-8	대	600.0	0.0	0.0	심*윤	
57	길곡면	길곡리	181-9	전	259.0	길곡면	길곡리	181-9	전	238.3	0.0	20.7	심*윤	
58	길곡면	길곡리	182	대	922.0	길곡면	길곡리	182	대	986.4	64.4	0.0	이*미	
59	길곡면	길곡리	182-1	전	1,322.0	길곡면	길곡리	182-1	전	1,322.0	0.0	0.0	조*희	
60	길곡면	길곡리	182-2	대	655.0	길곡면	길곡리	182-2	대	694.3	39.3	0.0	안*록	
61	길곡면	길곡리	182-3	대	699.0	길곡면	길곡리	182-3	대	732.4	33.4	0.0	장*기	
62	길곡면	길곡리	182-5	전	547.0	길곡면	길곡리	182-5	전	482.6	0.0	64.4	이*미	
63	길곡면	길곡리	182-6	대	629.0	길곡면	길곡리	182-6	대	629.0	0.0	0.0	김*수	
64	길곡면	길곡리	183	전	1,924.0	길곡면	길곡리	183	전	1,924.0	0.0	0.0	전*식	
65	길곡면	길곡리	184	전	1,395.0	길곡면	길곡리	184	전	1,395.0	0.0	0.0	신*기	

66	길곡면	길곡리	184-1	전	179.0	길곡면	길곡리	184-1	전	179.0	0.0	0.0	신*욱
67	길곡면	길곡리	185	전	1,650.0	길곡면	길곡리	185	전	1,521.0	0.0	129.0	신*기
68	길곡면	길곡리	186	전	1,718.0	길곡면	길곡리	186	전	1,718.0	0.0	0.0	전*식
69	길곡면	길곡리	186-1	전	808.0	길곡면	길곡리	186-1	전	756.0	0.0	52.0	엄*환
70	길곡면	길곡리	187	답	304.0	길곡면	길곡리	187	답	304.0	0.0	0.0	박*숙(외1명)
71	길곡면	길곡리	188	전	2,280.0	길곡면	길곡리	188	전	2,280.0	0.0	0.0	박*숙(외1명)
72	길곡면	길곡리	189	묘지	876.0	길곡면	길곡리	189	묘지	876.0	0.0	0.0	김*수
73	길곡면	길곡리	190	전	433.0	길곡면	길곡리	190	전	433.0	0.0	0.0	김*희
74	길곡면	길곡리	195	전	1,721.0	길곡면	길곡리	195	전	1,596.1	0.0	124.9	정*규
75	길곡면	길곡리	195-1	답	60.0	길곡면	길곡리	195-1	답	60.0	0.0	0.0	윤*성
76	길곡면	길곡리	196-1	답	39.0	길곡면	길곡리	196-1	답	39.0	0.0	0.0	윤*성
77	길곡면	길곡리	197-1	전	77.0	길곡면	길곡리	197-1	전	77.0	0.0	0.0	윤*성
78	길곡면	길곡리	198	유지	5,252.0	길곡면	길곡리	198	유지	5,299.9	47.9	0.0	창*군
79	길곡면	길곡리	208	임야	847.0	길곡면	길곡리	208	임야	847.0	0.0	0.0	고*혜
80	길곡면	길곡리	208-1	임야	178.0	길곡면	길곡리	208-1	임야	178.0	0.0	0.0	김*영
81	길곡면	길곡리	209	대	583.0	길곡면	길곡리	209	대	583.0	0.0	0.0	김*영
82	길곡면	길곡리	209-1	임야	666.0	길곡면	길곡리	209-1	임야	666.0	0.0	0.0	김*영
83	길곡면	길곡리	210	답	1,157.0	길곡면	길곡리	210	답	1,157.0	0.0	0.0	장*순
84	길곡면	길곡리	210-2	답	117.0	길곡면	길곡리	210-2	답	117.0	0.0	0.0	윤*성
85	길곡면	길곡리	211	구거	7,827.0	길곡면	길곡리	211	구거	7,340.9	0.0	486.1	국
86	길곡면	길곡리	212	도로	1,295.0	길곡면	길곡리	212	도로	1,333.7	38.7	0.0	국
87	길곡면	길곡리	213	도로	230.0	길곡면	길곡리	213	도로	234.0	4.0	0.0	국
88	길곡면	길곡리	218	답	734.0	길곡면	길곡리	218	답	734.0	0.0	0.0	김*희(외1명)
89	길곡면	길곡리	219-1	대	990.0	길곡면	길곡리	219-1	대	1,010.3	20.3	0.0	김*완
90	길곡면	길곡리	219-5	답	1,028.0	길곡면	길곡리	219-5	답	1,116.0	88.0	0.0	김*완
91	길곡면	길곡리	220-2	답	133.0	길곡면	길곡리	220-2	답	133.0	0.0	0.0	신*홍
92	길곡면	길곡리	221	도로	247.0	길곡면	길곡리	221	도로	216.5	0.0	30.5	국
93	길곡면	길곡리	222	도로	728.0	길곡면	길곡리	222	도로	742.7	14.7	0.0	국
94	길곡면	길곡리	223	도로	191.0	길곡면	길곡리	223	도로	207.8	16.8	0.0	국
95	길곡면	길곡리	226	답	450.0	길곡면	길곡리	226	답	450.0	0.0	0.0	신*봉
96	길곡면	길곡리	227	전	879.0	길곡면	길곡리	227	전	879.0	0.0	0.0	신*원
97	길곡면	길곡리	228	답	952.0	길곡면	길곡리	228	답	952.0	0.0	0.0	김*진
98	길곡면	길곡리	229	답	863.0	길곡면	길곡리	229	답	863.0	0.0	0.0	강*순
99	길곡면	길곡리	230	답	2,288.0	길곡면	길곡리	230	답	2,237.8	0.0	50.2	김*준
100	길곡면	길곡리	231	답	1,104.0	길곡면	길곡리	231	답	1,041.3	0.0	62.7	김*우

101	길곡면	길곡리	233	답	1,375.0	길곡면	길곡리	233	답	1,375.0	0.0	0.0	김*준	
102	길곡면	길곡리	234	임야	2,145.0	길곡면	길곡리	234	임야	2,145.0	0.0	0.0	김*우	
103	길곡면	길곡리	235	전	823.0	길곡면	길곡리	235	전	804.0	0.0	19.0	박*순(외2명)	
104	길곡면	길곡리	236-1	임야	460.0	길곡면	길곡리	236-1	임야	460.0	0.0	0.0	신*기	
105	길곡면	길곡리	236-2	답	648.0	길곡면	길곡리	236-2	답	648.0	0.0	0.0	박*민(외2명)	
106	길곡면	길곡리	237	전	1,240.0	길곡면	길곡리	237	전	1,240.0	0.0	0.0	박*민(외2명)	
107	길곡면	길곡리	238	답	1,812.0	길곡면	길곡리	238	답	1,812.0	0.0	0.0	경*** *중	
108	길곡면	길곡리	239	답	1,934.0	길곡면	길곡리	239	답	1,934.0	0.0	0.0	김*아	
109	길곡면	길곡리	240	답	942.0	길곡면	길곡리	240	답	942.0	0.0	0.0	강*순	
110	길곡면	길곡리	241	답	1,170.0	길곡면	길곡리	241	답	1,170.0	0.0	0.0	김*아	
111	길곡면	길곡리	250-1	유지	2,903.0	길곡면	길곡리	250-1	유지	2,903.0	0.0	0.0	창*군	
112	길곡면	길곡리	255	임야	202.0	길곡면	길곡리	255	임야	202.0	0.0	0.0	오*흥	
113	길곡면	길곡리	256	대	347.0	길곡면	길곡리	256	대	384.9	37.9	0.0	오*흥	
114	길곡면	길곡리	256-2	전	328.0	길곡면	길곡리	256-2	전	328.0	0.0	0.0	박*덕	
115	길곡면	길곡리	256-4	참고 용지	534.0	길곡면	길곡리	256-4	참고 용지	534.0	0.0	0.0	오*흥	
116	길곡면	길곡리	256-5	전	1,322.0	길곡면	길곡리	256-5	전	1,409.0	87.0	0.0	박*덕	
117	길곡면	길곡리	256-6	전	994.0	길곡면	길곡리	256-6	전	994.0	0.0	0.0	박*덕	
118	길곡면	길곡리	256-7	목장 용지	1,883.0	길곡면	길곡리	256-7	목장 용지	2,093.0	210.0	0.0	오*흥	
119	길곡면	길곡리	257	전	2,645.0	길곡면	길곡리	257	전	2,645.0	0.0	0.0	차*명	
120	길곡면	길곡리	257-1	전	1,144.0	길곡면	길곡리	257-1	전	1,144.0	0.0	0.0	김*은	
121	길곡면	길곡리	257-2	전	1,170.0	길곡면	길곡리	257-2	전	1,170.0	0.0	0.0	김*은	
122	길곡면	길곡리	258	임야	231.0	길곡면	길곡리	258	임야	231.0	0.0	0.0	신*암	
123	길곡면	길곡리	260	전	1,199.0	길곡면	길곡리	260	전	1,199.0	0.0	0.0	조*혁	
124	길곡면	길곡리	260-1	전	140.0	길곡면	길곡리	260-1	전	140.0	0.0	0.0	김*연	
125	길곡면	길곡리	261-1	임야	1,421.0	길곡면	길곡리	261-1	임야	1,421.0	0.0	0.0	김*연	
126	길곡면	길곡리	261-2	전	2,969.0	길곡면	길곡리	261-2	전	2,969.0	0.0	0.0	김*연	
127	길곡면	길곡리	262-1	답	731.0	길곡면	길곡리	262-1	답	731.0	0.0	0.0	김*욱	
128	길곡면	길곡리	262-2	임야	1,471.0	길곡면	길곡리	262-2	임야	1,471.0	0.0	0.0	창*군	
129	길곡면	길곡리	263	전	2,188.0	길곡면	길곡리	263	전	2,029.1	0.0	158.9	이*욱	
130	길곡면	길곡리	264	전	446.0	길곡면	길곡리	264	전	446.0	0.0	0.0	이*욱	
131	길곡면	길곡리	265-1	하천	499.0	길곡면	길곡리	265-1	하천	499.0	0.0	0.0	신*석	
132	길곡면	길곡리	265-2	전	1,481.0	길곡면	길곡리	265-2	전	1,481.0	0.0	0.0	김*임	
133	길곡면	길곡리	266	전	1,821.0	길곡면	길곡리	266	전	1,821.0	0.0	0.0	이*순	
134	길곡면	길곡리	266-1	전	103.0	길곡면	길곡리	266-1	전	70.7	0.0	32.3	창*군	

135	길곡면	길곡리	267	전	3,595.0	길곡면	길곡리	267	전	3,424.3	0.0	170.7	김*찬(외1명)
136	길곡면	길곡리	267-1	전	31.0	-	-	-	-	말소	0.0	31.0	윤*업(외1명)
137	길곡면	길곡리	267-2	전	100.0	-	-	-	-	말소	0.0	100.0	김*찬(외1명)
138	길곡면	길곡리	268	대	573.0	길곡면	길곡리	268	대	593.9	20.9	0.0	김*만
139	길곡면	길곡리	268-1	전	1,121.0	길곡면	길곡리	268-1	전	1,095.0	0.0	26.0	김*만
140	길곡면	길곡리	268-2	전	27.0	-	-	-	-	말소	0.0	27.0	창*군
141	길곡면	길곡리	268-3	전	238.0	-	-	-	-	말소	0.0	238.0	창*군
142	길곡면	길곡리	269-1	대	949.0	길곡면	길곡리	269-1	대	949.0	0.0	0.0	주*훈
143	길곡면	길곡리	269-2	전	2,631.0	길곡면	길곡리	269-2	전	2,631.0	0.0	0.0	오*흥
144	길곡면	길곡리	269-3	하천	238.0	길곡면	길곡리	269-3	하천	238.0	0.0	0.0	신*석
145	길곡면	길곡리	269-4	전	1,098.0	길곡면	길곡리	269-4	전	771.8	25.9	0.0	주*훈
								269-8	전	352.1			
146	길곡면	길곡리	269-5	대	41.0	-	-	-	-	말소	0.0	41.0	창*군
147	길곡면	길곡리	270	전	803.0	길곡면	길곡리	270	전	803.0	0.0	0.0	이*영
148	길곡면	길곡리	271	전	1,226.0	길곡면	길곡리	271	전	1,226.0	0.0	0.0	박*순(외2명)
149	길곡면	길곡리	272	전	4,631.0	길곡면	길곡리	272	전	4,631.0	0.0	0.0	박*순(외1명)
150	길곡면	길곡리	273	전	579.0	길곡면	길곡리	273	전	595.7	16.7	0.0	박*순(외2명)
151	길곡면	길곡리	273-1	전	3.0	길곡면	길곡리	273-1	전	3.0	0.0	0.0	박*순(외2명)
152	길곡면	길곡리	274	전	65.0	길곡면	길곡리	274	전	65.0	0.0	0.0	박*이
153	길곡면	길곡리	274-1	전	34.0	길곡면	길곡리	274-1	전	65.9	31.9	0.0	창*군
154	길곡면	길곡리	275-1	전	1,144.0	길곡면	길곡리	275-1	전	1,144.0	0.0	0.0	이*순
155	길곡면	길곡리	275-2	임야	966.0	길곡면	길곡리	275-2	임야	919.5	0.0	46.5	이*순
156	길곡면	길곡리	275-3	전	111.0	-	-	-	-	말소	0.0	111.0	이*순
157	길곡면	길곡리	275-4	전	87.0	-	-	-	-	말소	0.0	87.0	이*순
158	길곡면	길곡리	275-5	임야	42.0	-	-	-	-	말소	0.0	42.0	이*순
159	길곡면	길곡리	276	임야	220.0	길곡면	길곡리	276	임야	220.0	0.0	0.0	박*섭
160	길곡면	길곡리	276-1	임야	54.0	-	-	-	-	말소	0.0	54.0	박*섭
161	길곡면	길곡리	277	임야	2,698.0	길곡면	길곡리	277	임야	2,698.0	0.0	0.0	박*이
162	길곡면	길곡리	278-1	전	3,137.0	길곡면	길곡리	278-1	전	3,114.9	0.0	22.1	박*이
163	길곡면	길곡리	278-2	임야	1,715.0	길곡면	길곡리	278-2	임야	1,691.1	0.0	23.9	박*이
164	길곡면	길곡리	278-3	대	99.0	길곡면	길곡리	278-3	대	99.0	0.0	0.0	박*이
165	길곡면	길곡리	278-4	대	397.0	길곡면	길곡리	278-4	대	420.9	23.9	0.0	박*이

166	길곡면	길곡리	278-5	대	87.0	길곡면	길곡리	278-5	대	87.0	0.0	0.0	박*이	
167	길곡면	길곡리	279	전	2,631.0	길곡면	길곡리	279	전	2,631.0	0.0	0.0	이*영	
168	길곡면	길곡리	290-1	도로	3.0	길곡면	길곡리	290-1	도로	3.0	0.0	0.0	박*찬	
169	길곡면	길곡리	290-2	대	660.0	길곡면	길곡리	290-2	대	660.0	0.0	0.0	권*자	
170	길곡면	길곡리	290-3	답	494.0	길곡면	길곡리	290-3	답	494.0	0.0	0.0	권*자	
171	길곡면	길곡리	291-1	도로	119.0	길곡면	길곡리	291-1	도로	119.0	0.0	0.0	신*기	
172	길곡면	길곡리	291-2	도로	26.0	길곡면	길곡리	291-2	도로	26.0	0.0	0.0	신*기	
173	길곡면	길곡리	291-3	도로	26.0	길곡면	길곡리	291-3	도로	26.0	0.0	0.0	신*기	
174	길곡면	길곡리	291-4	전	2,902.0	길곡면	길곡리	291-4	전	2,902.0	0.0	0.0	신*두	
175	길곡면	길곡리	291-5	전	2,315.0	길곡면	길곡리	291-5	전	2,315.0	0.0	0.0	신*삼	
176	길곡면	길곡리	292	창고 용지	1,470.0	길곡면	길곡리	292	창고 용지	1,470.0	0.0	0.0	상*** **인	
177	길곡면	길곡리	292-1	대	474.0	길곡면	길곡리	292-1	대	474.0	0.0	0.0	이*백	
178	길곡면	길곡리	292-3	도로	708.0	길곡면	길곡리	292-3	도로	708.0	0.0	0.0	상*** **인(외1명)	
179	길곡면	길곡리	293	전	1,144.0	길곡면	길곡리	293	전	1,144.0	0.0	0.0	경*** ***중	
180	길곡면	길곡리	294	전	1,031.0	길곡면	길곡리	294	전	1,031.0	0.0	0.0	김*규(외4명)	
181	길곡면	길곡리	295	대	580.0	길곡면	길곡리	295	대	659.9	79.9	0.0	이*정	
182	길곡면	길곡리	295-1	전	1,403.0	길곡면	길곡리	295-1	전	1,329.2	0.0	73.8	이*정	
183	길곡면	길곡리	296	전	1,349.0	길곡면	길곡리	296	전	1,195.6	0.0	153.4	박*순	
184	길곡면	길곡리	297	전	1,167.0	길곡면	길곡리	297	전	1,084.7	0.0	82.3	김*만	
185	길곡면	길곡리	298	전	1,038.0	길곡면	길곡리	298	전	875.2	0.0	162.8	경*** ***중	
186	길곡면	길곡리	299	답	281.0	길곡면	길곡리	299	답	281.0	0.0	0.0	신*욱	
187	길곡면	길곡리	300	대	549.0	길곡면	길곡리	300	대	549.0	0.0	0.0	김*욱	
188	길곡면	길곡리	301	창고 용지	893.0	길곡면	길곡리	301	창고 용지	761.5	0.0	131.5	창*군	
189	길곡면	길곡리	302-1	대	225.0	길곡면	길곡리	302-1	대	206.5	0.0	18.5	김*욱	
190	길곡면	길곡리	302-2	대	255.0	길곡면	길곡리	302-2	대	280.1	25.1	0.0	정*미	
191	길곡면	길곡리	302-3	대	902.0	길곡면	길곡리	302-3	대	751.1	0.0	150.9	이*순	
192	길곡면	길곡리	302-4	대	106.0	길곡면	길곡리	302-4	대	106.0	0.0	0.0	최*정	
193	길곡면	길곡리	302-6	대	142.0	길곡면	길곡리	302-6	대	194.2	52.2	0.0	이*연	
194	길곡면	길곡리	302-7	대	294.0	길곡면	길곡리	302-7	대	294.0	0.0	0.0	이*연	
195	길곡면	길곡리	302-8	대	288.0	길곡면	길곡리	302-8	대	288.0	0.0	0.0	최*정	
196	길곡면	길곡리	303	대	466.0	길곡면	길곡리	303	대	457.0	0.0	9.0	김*임	
197	길곡면	길곡리	304	대	264.0	길곡면	길곡리	304	대	278.8	14.8	0.0	송*호	
198	길곡면	길곡리	305	대	357.0	길곡면	길곡리	305	대	357.0	0.0	0.0	최*원	
199	길곡면	길곡리	306	대	895.0	길곡면	길곡리	306	대	895.0	0.0	0.0	김*찬	

200	길곡면	길곡리	306-1	대	7.0	길곡면	길곡리	306-1	대	12.7	5.7	0.0	창*군	
201	길곡면	길곡리	307-1	전	185.0	길곡면	길곡리	307-1	전	185.0	0.0	0.0	김*수	
202	길곡면	길곡리	307-2	전	529.0	길곡면	길곡리	307-2	전	523.0	0.0	6.0	김*수	
203	길곡면	길곡리	308	전	317.0	길곡면	길곡리	308	전	339.6	22.6	0.0	김*준	
204	길곡면	길곡리	310-1	도로	3.0	길곡면	길곡리	310-1	도로	3.0	0.0	0.0	김*홍	
205	길곡면	길곡리	311-1	도로	7.0	길곡면	길곡리	311-1	도로	7.0	0.0	0.0	신*석	
206	길곡면	길곡리	311-2	도로	23.0	-	-	-	-	말소	0.0	23.0	창*군	
207	길곡면	길곡리	311-3	대	66.0	길곡면	길곡리	311-3	대	44.2	0.0	21.8	이*백	
208	길곡면	길곡리	312-1	전	69.0	길곡면	길곡리	312-1	전	69.0	0.0	0.0	창*군	
209	길곡면	길곡리	312-2	도로	136.0	길곡면	길곡리	312-2	도로	136.0	0.0	0.0	신*준	
210	길곡면	길곡리	313-1	답	791.0	길곡면	길곡리	313-1	답	791.0	0.0	0.0	신*태	
211	길곡면	길곡리	313-2	전	3,453.0	길곡면	길곡리	313-2	전	3,420.7	0.0	32.3	신*태	
212	길곡면	길곡리	313-3	도로	13.0	-	-	-	-	말소	0.0	13.0	창*군	
213	길곡면	길곡리	313-4	도로	185.0	길곡면	길곡리	313-4	도로	151.3	0.0	33.7	창*군	
214	길곡면	길곡리	313-5	도로	165.0	길곡면	길곡리	313-5	도로	237.9	72.9	0.0	창*군	
215	길곡면	길곡리	313-6	전	20.0	-	-	-	-	말소	0.0	20.0	창*군	
216	길곡면	길곡리	313-8	답	32.0	-	-	-	-	말소	0.0	32.0	창*군	
217	길곡면	길곡리	313-9	전	380.0	길곡면	길곡리	313-9	전	563.9	183.9	0.0	창*군	
218	길곡면	길곡리	313-10	전	89.0	길곡면	길곡리	313-10	전	89.0	0.0	0.0	창*군	
219	길곡면	길곡리	314	전	14.0	길곡면	길곡리	314	전	14.0	0.0	0.0	서*희	
220	길곡면	길곡리	314-2	도로	69.0	-	-	-	-	말소	0.0	69.0	창*군	
221	길곡면	길곡리	316-2	도로	33.0	길곡면	길곡리	316-2	도로	33.0	0.0	0.0	신*준	
222	길곡면	길곡리	316-3	도로	40.0	길곡면	길곡리	316-3	도로	40.0	0.0	0.0	신*준	
223	길곡면	길곡리	367	도로	274.0	길곡면	길곡리	367	도로	257.2	0.0	16.8	국	
224	길곡면	길곡리	387	도로	455.0	길곡면	길곡리	387	도로	472.4	17.4	0.0	국	
225	길곡면	길곡리	389	도로	753.0	길곡면	길곡리	389	도로	742.2	0.0	10.8	국	
226	길곡면	길곡리	390	답	880.0	길곡면	길곡리	390	답	880.0	0.0	0.0	신*은(외2명)	
227	길곡면	길곡리	392-1	답	3,418.0	길곡면	길곡리	392-1	답	3,418.0	0.0	0.0	신*은(외2명)	
228	길곡면	길곡리	392-2	답	3,164.0	길곡면	길곡리	392-2	답	3,164.0	0.0	0.0	이*중	
229	길곡면	길곡리	392-4	대	612.0	길곡면	길곡리	392-4	대	612.0	0.0	0.0	김*경	
230	길곡면	길곡리	392-5	대	655.0	길곡면	길곡리	392-5	대	655.0	0.0	0.0	김*식	
231	길곡면	길곡리	392-7	창고 용지	330.0	길곡면	길곡리	392-7	창고 용지	357.1	27.1	0.0	김*식	
232	길곡면	길곡리	392-8	대	640.0	길곡면	길곡리	392-8	대	640.0	0.0	0.0	강*문	
233	길곡면	길곡리	392-9	답	397.0	길곡면	길곡리	392-9	답	397.0	0.0	0.0	강*문	
234	길곡면	길곡리	392-10	답	220.0	길곡면	길곡리	392-10	답	238.3	18.3	0.0	김*경	

235	길곡면	길곡리	393	도로	994.0	길곡면	길곡리	393	도로	1,088.7	94.7	0.0	국
236	길곡면	길곡리	394-1	답	913.0	길곡면	길곡리	394-1	답	913.0	0.0	0.0	임*순(외1명)
237	길곡면	길곡리	394-2	답	1,553.0	길곡면	길곡리	394-2	답	1,553.0	0.0	0.0	최*미
238	길곡면	길곡리	395	답	1,051.0	길곡면	길곡리	395	답	1,051.0	0.0	0.0	신*홍
239	길곡면	길곡리	396-1	대	377.0	길곡면	길곡리	396-1	대	377.0	0.0	0.0	박*순(외1명)
240	길곡면	길곡리	396-2	답	792.0	길곡면	길곡리	396-2	답	792.0	0.0	0.0	김*우
241	길곡면	길곡리	396-3	답	1,038.0	길곡면	길곡리	396-3	답	1,038.0	0.0	0.0	최*순
242	길곡면	길곡리	396-4	도로	283.0	길곡면	길곡리	396-4	도로	283.0	0.0	0.0	최*순(외2명)
243	길곡면	길곡리	397-1	답	1,643.0	길곡면	길곡리	397-1	답	1,685.0	42.0	0.0	이*애
244	길곡면	길곡리	397-2	답	543.0	길곡면	길곡리	397-2	답	543.0	0.0	0.0	이*애
245	길곡면	길곡리	397-3	답	750.0	길곡면	길곡리	397-3	답	750.0	0.0	0.0	이*애
246	길곡면	길곡리	397-4	답	1,331.0	길곡면	길곡리	397-4	답	1,331.0	0.0	0.0	이*애
247	길곡면	길곡리	397-5	답	1,946.0	길곡면	길곡리	397-5	답	1,946.0	0.0	0.0	신*기
248	길곡면	길곡리	397-6	답	2,060.0	길곡면	길곡리	397-6	답	2,060.0	0.0	0.0	신*기
249	길곡면	길곡리	397-7	답	1,848.0	길곡면	길곡리	397-7	답	1,848.0	0.0	0.0	김*수
250	길곡면	길곡리	397-8	답	1,131.0	길곡면	길곡리	397-8	답	1,153.4	22.4	0.0	김*호
251	길곡면	길곡리	397-9	답	812.0	길곡면	길곡리	397-9	답	812.0	0.0	0.0	박*이
252	길곡면	길곡리	1282-1	하천	1,067.0	길곡면	길곡리	1282-1	하천	1,275.6	208.6	0.0	국
253	길곡면	길곡리	1282-2	하천	2,729.0	길곡면	길곡리	1282-2	하천	2,977.6	248.6	0.0	국
254	길곡면	길곡리	1282-3	하천	2,438.0	길곡면	길곡리	1282-3	하천	2,394.6	0.0	43.4	국
255	길곡면	길곡리	1282-4	하천	927.0	길곡면	길곡리	1282-4	하천	637.6	0.0	289.4	국
256	길곡면	길곡리	1282-6	하천	10,554.0	길곡면	길곡리	1282-6	하천	11,118.8	564.8	0.0	국
257	길곡면	길곡리	1282-7	하천	5,128.0	길곡면	길곡리	1282-7	하천	5,076.2	0.0	51.8	국
258	길곡면	길곡리	1282-14	하천	554.0	길곡면	길곡리	1282-14	하천	648.1	94.1	0.0	국
259	길곡면	길곡리	1282-8	하천	16.0	-	-	-	-	말소	0.0	16.0	국
260	길곡면	길곡리	1283	도로	1,128.0	길곡면	길곡리	1283	도로	1,790.6	662.6	0.0	국
261	길곡면	길곡리	산54	임야	1,002.0	길곡면	길곡리	278-6	임야	731.3	0.0	270.7	임*택
262	길곡면	길곡리	산54-2	임야	124.0	길곡면	길곡리	278-7	임야	115.0	0.0	9.0	박*이
263	길곡면	길곡리	산54-4	수도용지	963.0	길곡면	길곡리	277-1	수도용지	1,102.1	139.1	0.0	창*균
264	길곡면	길곡리	산54-7	임야	196.0	길곡면	길곡리	256-8	임야	136.6	0.0	59.4	오*홍
265	길곡면	길곡리	산61-2	임야	223.0	길곡면	길곡리	255-1	임야	234.0	11.0	0.0	오*홍

창녕군 공고 제2024-568호

유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유리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창 념 군 수

1. 사 업 명: 유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창녕군수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유리지구: 668필, 511,865.8㎡
4. 지적확정조서: 별도첨부
5. 공람기간: 2024. 3. 26.~2024. 4. 8.(14일간)
6. 공람장소: 창녕군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7. 공람 비치서류: 별도첨부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8. 문의처: 창녕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55-530-1395)

유리지구 지적확정 조서

번호	중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증가(m ²)	감소(m ²)	성명	
1	장마면	유리	656	대	284.0	장마면	유리	656	대	275.9	0.0	8.1	강*이	
2	장마면	유리	1244	묘지	314.0	장마면	유리	1244	묘지	314.0	0.0	0.0	강*룡	
3	장마면	유리	401-3	도로	17.0	장마면	유리	401-3	도로	17.0	0.0	0.0	강*용	
4	장마면	유리	501	묘지	569.0	장마면	유리	501	묘지	569.0	0.0	0.0	강*재	
5	장마면	유리	414	전	33.0	장마면	유리	414	전	33.0	0.0	0.0	강*협	
6	장마면	유리	429	전	255.0	장마면	유리	429	전	255.0	0.0	0.0	강*길	
7	장마면	유리	506	대	278.0	장마면	유리	506	대	280.7	2.7	0.0	강*길	
8	장마면	유리	481-1	답	810.0	장마면	유리	481-1	답	536.0	0.0	274.0	강*재	
9	장마면	유리	481-2	답	602.0	장마면	유리	481-2	답	855.2	253.2	0.0	강*재	
10	장마면	유리	505	임야	1,588.0	장마면	유리	505	임야	1,532.3	0.0	55.7	강*점	
11	장마면	유리	720-1	전	861.0	장마면	유리	720-1	전	846.4	0.0	14.6	강*열	
12	장마면	유리	460	전	952.0	장마면	유리	460	전	952.0	0.0	0.0	강*림	
13	장마면	유리	491	전	1,043.0	장마면	유리	491	전	968.7	0.0	74.3	강*훈	
14	장마면	유리	503	대	373.0	장마면	유리	503	대	476.5	103.5	0.0	강*훈	
15	장마면	유리	503-4	대	479.0	장마면	유리	503-4	대	355.4	0.0	123.6	강*훈	
16	장마면	유리	503-6	대	242.0	장마면	유리	503-6	대	255.9	13.9	0.0	강*훈	
17	장마면	유리	435	대	206.0	장마면	유리	435	대	278.0	72.0	0.0	강*운	
18	장마면	유리	436	대	390.0	장마면	유리	436	대	298.2	0.0	91.8	강*운	
19	장마면	유리	437	대	96.0	장마면	유리	437	대	96.0	0.0	0.0	강*운	
20	장마면	유리	1246	전	1,263.0	장마면	유리	1246	전	1,263.0	0.0	0.0	강*일	
21	장마면	유리	503-1	전	390.0	장마면	유리	503-1	전	390.0	0.0	0.0	강*록	
22	장마면	유리	503-3	도로	277.0	장마면	유리	503-3	도로	285.1	8.1	0.0	강*록	
23	장마면	유리	503-5	대	405.0	장마면	유리	503-5	대	384.6	0.0	20.4	강*록	
24	장마면	유리	505-1	도로	330.0	-	-	-	-	말소	0.0	330.0	강*록	
25	장마면	유리	89-1	도로	96.0	장마면	유리	89-1	도로	98.7	2.7	0.0	경상남도	
26	장마면	유리	229-1	도로	813.0	장마면	유리	229-1	도로	932.7	119.7	0.0	경상남도	
27	장마면	유리	234-5	도로	115.0	장마면	유리	234-5	도로	115.0	0.0	0.0	경상남도	
28	장마면	유리	332-1	도로	79.0	장마면	유리	332-1	도로	74.5	0.0	4.5	경상남도	
29	장마면	유리	687	대	516.0	장마면	유리	687	대	447.6	0.0	68.4	경**** 수신재 중중	
30	장마면	유리	699	임야	8,734.0	장마면	유리	699	임야	8,706.6	0.0	27.4	경**** 수신재 중중	

31	장마면	유리	752-2	답	360.0	장마면	유리	752-2	답	360.0	0.0	0.0	경림수산재 중중	
32	장마면	유리	1266	전	2,434.0	장마면	유리	1266	전	2,104.8	0.0	329.2	고매당공 파중중	
33	장마면	유리	1267	대	484.0	장마면	유리	1267	대	494.5	10.5	0.0	고매당공 파중중	
34	장마면	유리	1280	대	1,103.0	장마면	유리	1280	대	1,115.5	12.5	0.0	고*숙	
35	장마면	유리	1280-1	전	1,133.0	장마면	유리	1280-1	전	1,147.3	14.3	0.0	고*숙	
36	장마면	유리	701	전	707.0	장마면	유리	701	전	707.0	0.0	0.0	고*석	
37	장마면	유리	476	전	539.0	장마면	유리	476	전	539.0	0.0	0.0	공*해	
38	장마면	유리	477-1	전	617.0	장마면	유리	477-1	전	617.0	0.0	0.0	공*해	
39	장마면	유리	720	전	709.0	장마면	유리	720	전	692.5	0.0	16.5	곽*춘	
40	장마면	유리	347	임야	721.0	장마면	유리	347	임야	721.0	0.0	0.0	구*진	
41	장마면	유리	356	대	142.0	장마면	유리	356	대	142.0	0.0	0.0	구*철	
42	장마면	유리	639	임야	1,421.0	장마면	유리	639	임야	1,421.0	0.0	0.0	구*희	
43	장마면	유리	712	전	1,309.0	장마면	유리	712	전	1,300.7	0.0	8.3	구*애	
44	장마면	유리	1287-1	도로	10.0	장마면	유리	1287-1	도로	97.5	87.5	0.0	국(건설교통 부)	
45	장마면	유리	2000-3	도로	721.0	장마면	유리	2000-3 2000-1 0	도로 도로	358.2 621.1	258. 3	0.0	국(건설교통 부)	
46	장마면	유리	2005-6 2	도로	10,835. 0	장마면	유리	2005-6 2 2005-6 9 2005-7 0 2005-7 1	도로 도로 도로 도로	4,876.6 2,915.1 1,993.1 4,505.1	3,45 4.9	0.0	국(건설교통 부)	
47	장마면	유리	2005-6 3	도로	378.0	장마면	유리	2005-6 3	도로	373.2	0.0	4.8	국(건설교통 부)	
48	장마면	유리	2214	도로	93.0	장마면	유리	2214	도로	87.0	0.0	6.0	국(건설교통 부)	
49	장마면	강리	1083-6	도로	3,303.0	장마면	강리	1083-6	도로	3,660.3	357. 3	0.0	국(농림수산 부)	
50	장마면	유리	2004	도로	684.0	장마면	유리	2004	도로	632.0	0.0	52.0	국(농림수산 부)	
51	장마면	유리	2006	구거	804.0	장마면	유리	2006	구거	472.0	0.0	332.0	국(농림수산 부)	
52	장마면	유리	2006-1	구거	57.0	장마면	유리	2006-1	구거	57.0	0.0	0.0	국(농림수산 부)	
53	장마면	유리	2007	도로	1,509.0	장마면	유리	2007	도로	2,238.5	729. 5	0.0	국(농림수산 부)	
54	장마면	유리	2008	도로	886.0	장마면	유리	2008	도로	1,208.1	322. 1	0.0	국(농림수산 부)	
55	장마면	유리	2009	도로	60.0	장마면	유리	2009	도로	90.5	30.5	0.0	국(농림수산 부)	

56	장마면	유리	2010	도로	36.0	장마면	유리	2010	도로	57.5	21.5	0.0	국(농림수산부)	
57	장마면	유리	2001-2	구거	3,330.0	장마면	유리	2001-2	구거	3,039.7	0.0	63.1	국(농림수산부)	
								2001-6	구거	227.2				
58	장마면	유리	471	묘지	374.0	장마면	유리	471	묘지	318.6	0.0	55.4	국(재정경제부)	
59	장마면	유리	1312-2	전	1,577.0	장마면	유리	1312-2	전	1,490.8	0.0	86.2	국(재정경제부)	
60	장마면	유리	245-1	대	46.0	장마면	유리	245-1	대	46.0	0.0	0.0	권*녀	
61	장마면	유리	248	대	169.0	장마면	유리	248	대	195.6	26.6	0.0	권*녀	
62	장마면	유리	706-1	전	1,398.0	장마면	유리	706-1	전	1,335.3	0.0	62.7	권*식	
63	장마면	유리	1260	묘지	1,081.0	장마면	유리	1260	묘지	1,081.0	0.0	0.0	권*준	
64	장마면	유리	1304	임야	6,109.0	장마면	유리	1304	임야	6,109.0	0.0	0.0	기*서	
65	장마면	유리	1251	전	1,944.0	장마면	유리	1251	전	1,944.0	0.0	0.0	기*영	
66	장마면	유리	1309	전	803.0	장마면	유리	1309	전	803.0	0.0	0.0	기*영	
67	장마면	유리	723	전	2,212.0	장마면	유리	723	전	2,162.2	0.0	49.8	김*태	
68	장마면	유리	508-3	대	688.0	장마면	유리	508-3	대	696.0	8.0	0.0	김*수	
69	장마면	유리	230-3	도로	36.0	장마면	유리	230-3	도로	36.0	0.0	0.0	김*수	
70	장마면	유리	362	대	423.0	장마면	유리	362	대	276.5	0.0	146.5	김*리	
71	장마면	유리	363	대	238.0	장마면	유리	363	대	238.0	0.0	0.0	김*리	
72	장마면	유리	368-1	대	271.0	장마면	유리	368-1	대	368.0	97.0	0.0	김*리	
73	장마면	유리	648	답	3,005.0	장마면	유리	648	답	2,847.2	0.0	157.8	김*순	
74	장마면	유리	660	대	402.0	장마면	유리	660	대	402.0	0.0	0.0	김*순	
75	장마면	유리	657	대	764.0	장마면	유리	657	대	789.5	25.5	0.0	김*종	
76	장마면	유리	1298-3	답	1,704.0	장마면	유리	1298-3	답	1,704.0	0.0	0.0	김*학	
77	장마면	유리	1298-4	답	101.0	-	-	-	-	말소	0.0	101.0	김*학	
78	장마면	유리	1300	묘지	215.0	장마면	유리	1300	묘지	215.0	0.0	0.0	김*홍	
79	장마면	유리	1258-1	전	218.0	장마면	유리	1258-1	전	218.0	0.0	0.0	김*란	
80	장마면	유리	1261-3	대	96.0	장마면	유리	1261-3	대	105.4	9.4	0.0	김*란	
81	장마면	유리	1261-4	전	770.0	장마면	유리	1261-4	전	805.0	35.0	0.0	김*란	
82	장마면	유리	1334-2	전	336.0	장마면	유리	1334-2	전	336.0	0.0	0.0	김*구	
83	장마면	유리	450	전	826.0	장마면	유리	450	전	826.0	0.0	0.0	김*숙	
84	장마면	유리	1274-3	전	304.0	장마면	유리	1274-3	전	304.0	0.0	0.0	김*이	
85	장마면	유리	1268-1	전	1,011.0	장마면	유리	1268-1	전	1,011.0	0.0	0.0	김*선	
86	장마면	유리	672-1	전	1,094.0	장마면	유리	672-1	전	1,094.0	0.0	0.0	김*태	
87	장마면	유리	672-2	전	1,207.0	장마면	유리	672-2	전	1,207.0	0.0	0.0	김*태	
88	장마면	유리	677	전	327.0	장마면	유리	677	전	327.0	0.0	0.0	김*태	
89	장마면	유리	681	대	218.0	장마면	유리	681	대	279.8	61.8	0.0	김*태	

90	장마면	유리	688	전	595.0	장마면	유리	688	전	595.0	0.0	0.0	김*태	
91	장마면	유리	676	전	1,504.0	장마면	유리	676	전	1,486.5	0.0	17.5	김*수	
92	장마면	유리	1254	전	345.0	장마면	유리	1254	전	345.0	0.0	0.0	김*석	
93	장마면	유리	1254-1	도로	22.0	장마면	유리	1254-1	도로	22.0	0.0	0.0	김*석	
94	장마면	유리	713-1	전	876.0	장마면	유리	713-1	전	876.0	0.0	0.0	김*규(외 1명)	
95	장마면	유리	1242-2	전	129.0	장마면	유리	1242-2	전	129.0	0.0	0.0	김*태	
96	장마면	유리	1243-1	임야	5,398.0	장마면	유리	1243-1	임야	5,398.0	0.0	0.0	김*태	
97	장마면	유리	1252	전	562.0	장마면	유리	1252	전	562.0	0.0	0.0	김*태	
98	장마면	유리	490	전	707.0	장마면	유리	490	전	707.0	0.0	0.0	김*자	
99	장마면	유리	1289-1	대	562.0	장마면	유리	1289-1	대	562.0	0.0	0.0	김*근	
100	장마면	유리	459	묘지	853.0	장마면	유리	459	묘지	853.0	0.0	0.0	김*룡	
101	장마면	유리	462	묘지	565.0	장마면	유리	462	묘지	565.0	0.0	0.0	김*룡	
102	장마면	유리	1333	임야	1,990.0	장마면	유리	1333	임야	1,990.0	0.0	0.0	김*룡	
103	장마면	유리	327	대	152.0	장마면	유리	327	대	199.3	47.3	0.0	김*남	
104	장마면	유리	715	전	1,332.0	장마면	유리	715	전	1,332.0	0.0	0.0	김*수	
105	장마면	유리	425	대	1,117.0	장마면	유리	425	대	1,117.0	0.0	0.0	김*은	
106	장마면	유리	1284-1	답	116.0	장마면	유리	1284-1	답	110.3	0.0	5.7	김*운	
107	장마면	유리	1285-1	대	344.0	장마면	유리	1285-1	대	314.0	0.0	30.0	김*운	
108	장마면	유리	667	대	648.0	장마면	유리	667	대	648.0	0.0	0.0	김*은	
109	장마면	유리	370	대	327.0	장마면	유리	370	대	293.6	0.0	33.4	김*이	
110	장마면	유리	452	묘지	2,698.0	장마면	유리	452	묘지	2,698.0	0.0	0.0	김*호	
111	장마면	유리	1236	도로	397.0	장마면	유리	1236	도로	397.0	0.0	0.0	김*호	
112	장마면	유리	1256-1	묘지	883.0	장마면	유리	1256-1	묘지	883.0	0.0	0.0	김*호	
113	장마면	유리	1256-2	도로	23.0	장마면	유리	1256-2	도로	23.0	0.0	0.0	김*호	
114	장마면	유리	365	대	208.0	장마면	유리	365	대	208.0	0.0	0.0	김*연	
115	장마면	유리	698	전	159.0	장마면	유리	698	전	159.0	0.0	0.0	김*원(외 4명)	
116	장마면	유리	458	전	783.0	장마면	유리	458	전	783.0	0.0	0.0	김*자	
117	장마면	유리	226-1	대	431.0	장마면	유리	226-1	대	416.6	0.0	14.4	김*근	
118	장마면	유리	675	전	1,560.0	장마면	유리	675	전	1,491.9	0.0	68.1	김*근	
119	장마면	유리	674	전	817.0	장마면	유리	674	전	817.0	0.0	0.0	김**** 파광계 충충	
120	장마면	유리	713-2	전	1,031.0	장마면	유리	713-2	전	1,031.0	0.0	0.0	김**** 파광계 충충	
121	장마면	유리	717	전	909.0	장마면	유리	717	전	909.0	0.0	0.0	김**** 파광계 충충	
122	장마면	유리	637-1	대	271.0	장마면	유리	637-1	대	271.0	0.0	0.0	김*열	
123	장마면	유리	641	대	367.0	장마면	유리	641	대	348.0	0.0	19.0	김*열	

124	장마면	유리	685-2	도로	40.0	장마면	유리	685-2	도로	40.0	0.0	0.0	김*찬	
125	장마면	유리	351-2	대	722.0	장마면	유리	351-2	대	722.0	0.0	0.0	김*선	
126	장마면	유리	354	대	323.0	장마면	유리	354	대	311.5	0.0	11.5	김*선	
127	장마면	유리	354-2	대	118.0	장마면	유리	354-2	대	123.3	5.3	0.0	김*선	
128	장마면	유리	90-3	도로	20.0	장마면	유리	90-3	도로	20.0	0.0	0.0	남*주	
129	장마면	유리	690	전	58.0	장마면	유리	690	전	58.0	0.0	0.0	남*영	
130	장마면	유리	492	대	955.0	장마면	유리	492	대	955.0	0.0	0.0	노*구	
131	장마면	유리	388-1	임야	1,909.0	장마면	유리	388-1	임야	1,850.4	0.0	58.6	능원파대조공영농문중	****공정공의산중
132	장마면	유리	388-16	임야	247.0	장마면	유리	388-16	임야	247.0	0.0	0.0	능원파대조공영농문중	****공정공의산중
133	장마면	유리	418	임야	6,813.0	장마면	유리	418	임야	6,813.0	0.0	0.0	능원파대조공영농문중	****공정공의산중
134	장마면	유리	240	전	225.0	장마면	유리	240	전	183.0	0.0	42.0	최*숙(외 4명)	
135	장마면	유리	246	대	351.0	장마면	유리	246	대	302.1	0.0	48.9	최*숙(외 4명)	
136	장마면	유리	334-2	묘지	1,491.0	장마면	유리	334-2	묘지	1,491.0	0.0	0.0	최*숙(외 5명)	
137	장마면	유리	346	대	1,048.0	장마면	유리	346	대	1,049.7	1.7	0.0	박*광(외 1명)	
138	장마면	유리	350	전	221.0	장마면	유리	350	전	221.0	0.0	0.0	김*선(외 1명)	
139	장마면	유리	375	대	377.0	장마면	유리	375	대	368.4	0.0	8.6	신*진(외 1명)	
140	장마면	유리	388-3	전	559.0	장마면	유리	388-3	전	559.0	0.0	0.0	박*화(외 2명)	
141	장마면	유리	388-5	전	350.0	장마면	유리	388-5	전	350.0	0.0	0.0	박*화(외 2명)	
142	장마면	유리	388-6	과수원	6,278.0	장마면	유리	388-6	과수원	6,278.0	0.0	0.0	박*화(외 2명)	
143	장마면	유리	389-2	전	203.0	장마면	유리	389-2	전	203.0	0.0	0.0	배*태(외 1명)	
144	장마면	유리	390	대	721.0	장마면	유리	390	대	721.0	0.0	0.0	박*원(외 1명)	
145	장마면	유리	404	대	436.0	장마면	유리	404	대	411.4	0.0	24.6	김*은(외 1명)	
146	장마면	유리	410	전	79.0	장마면	유리	410	전	79.0	0.0	0.0	박*우(외 1명)	

147	장마면	유리	424	임야	853.0	장마면	유리	424	임야	853.0	0.0	0.0	박*우(외 1명)
148	장마면	유리	426	대	456.0	장마면	유리	426	대	456.0	0.0	0.0	윤*준(외 1명)
149	장마면	유리	443	대	859.0	장마면	유리	443	대	811.2	0.0	47.8	서*관(외 1명)
150	장마면	유리	443-2	대	60.0	장마면	유리	443-2	대	60.0	0.0	0.0	서*관(외 2명)
151	장마면	유리	461	전	526.0	장마면	유리	461	전	526.0	0.0	0.0	손*태(외 1명)
152	장마면	유리	475	전	1,818.0	장마면	유리	475	전	1,767.9	0.0	50.1	이*봉(외 1명)
153	장마면	유리	482	대	650.0	장마면	유리	482	대	682.9	32.9	0.0	이*봉(외 1명)
154	장마면	유리	482-1	전	1,370.0	장마면	유리	482-1	전	1,306.4	0.0	63.6	이*봉(외 1명)
155	장마면	유리	487-1	임야	2,945.0	장마면	유리	487-1	임야	2,945.0	0.0	0.0	성*화(외 1명)
156	장마면	유리	508-1	전	309.0	장마면	유리	508-1	전	309.0	0.0	0.0	박*웅(외 1명)
157	장마면	유리	508-4	전	5.0	장마면	유리	508-4	전	5.0	0.0	0.0	박*웅(외 1명)
158	장마면	유리	625-1	도로	33.0	장마면	유리	625-1	도로	33.0	0.0	0.0	서*관(외 1명)
159	장마면	유리	642-1	대	159.0	장마면	유리	642-1	대	159.0	0.0	0.0	서*철(외 2명)
160	장마면	유리	642-2	도로	86.0	장마면	유리	642-2	도로	86.0	0.0	0.0	서*흥(외 1명)
161	장마면	유리	643-2	답	1,438.0	장마면	유리	643-2	답	1,373.9	0.0	64.1	서*호(외 2명)
162	장마면	유리	647-1	답	1,772.0	장마면	유리	647-1	답	1,772.0	0.0	0.0	이*희(외 1명)
163	장마면	유리	653	답	863.0	장마면	유리	653	답	863.0	0.0	0.0	김*(외 1명)
164	장마면	유리	654-2	답	1,008.0	장마면	유리	654-2	답	1,008.0	0.0	0.0	김*(외 1명)
165	장마면	유리	666	대	542.0	장마면	유리	666	대	542.0	0.0	0.0	김*숙(외 1명)
166	장마면	유리	697	전	364.0	장마면	유리	697	전	364.0	0.0	0.0	강*식(외 1명)
167	장마면	유리	721	임야	8,489.0	장마면	유리	721	임야	8,270.3	0.0	218.7	강*식(외 1명)
168	장마면	유리	722	전	1,669.0	장마면	유리	722	전	1,628.1	0.0	40.9	이*범(외 1명)
169	장마면	유리	752-1	도로	56.0	장마면	유리	752-1	도로	56.0	0.0	0.0	김*원(외 4명)
170	장마면	유리	753-1	도로	10.0	장마면	유리	753-1	도로	10.0	0.0	0.0	김*두(외 2명)

171	장마면	유리	753-2	대	245.0	장마면	유리	753-2	대	315.1	70.1	0.0	김*(외 1명)	
172	장마면	유리	754	답	929.0	장마면	유리	754	답	880.8	0.0	48.2	김*(외 1명)	
173	장마면	유리	755	답	856.0	장마면	유리	755	답	856.0	0.0	0.0	김*(외 1명)	
174	장마면	유리	1250	전	1,907.0	장마면	유리	1250	전	1,907.0	0.0	0.0	박*주(외 2명)	
175	장마면	유리	1266-1	전	2,954.0	장마면	유리	1266-1	전	2,881.0	0.0	73.0	강*수(외 2명)	
176	장마면	유리	1267-1	대	61.0	장마면	유리	1267-1	대	61.0	0.0	0.0	강*수(외 2명)	
177	장마면	유리	1274-1	전	1,983.0	장마면	유리	1274-1	전	1,983.0	0.0	0.0	김*운(외 1명)	
178	장마면	유리	1275	전	1,759.0	장마면	유리	1275	전	1,755.8	0.0	3.2	유*연(외 1명)	
179	장마면	유리	1287-2	대	387.0	장마면	유리	1287-2	대	393.5	6.5	0.0	손*수(외 1명)	
180	장마면	유리	1288	대	519.0	장마면	유리	1288	대	519.0	0.0	0.0	서*수(외 3명)	
181	장마면	유리	1294-1	대	936.0	장마면	유리	1294-1	대	924.8	0.0	11.2	변*숙(외 1명)	
182	장마면	유리	1305	묘지	1,514.0	장마면	유리	1305	묘지	1,514.0	0.0	0.0	하*령(외 3명)	
183	장마면	유리	1306	전	69.0	장마면	유리	1306	전	69.0	0.0	0.0	하*령(외 3명)	
184	장마면	유리	1335	답	3,081.0	장마면	유리	1335	답	3,081.0	0.0	0.0	성*옥(외 2명)	
185	장마면	유리	441	대	628.0	장마면	유리	441	대	640.7	12.7	0.0	민*룡	
186	장마면	유리	1271	전	1,438.0	장마면	유리	1271	전	1,386.6	0.0	51.4	민*선	
187	장마면	유리	661	전	109.0	장마면	유리	661	전	109.0	0.0	0.0	박*희	
188	장마면	유리	389	전	202.0	장마면	유리	389	전	202.0	0.0	0.0	박*태	
189	장마면	유리	673-2	전	1,140.0	장마면	유리	673-2	전	1,140.0	0.0	0.0	박*화	
190	장마면	유리	638	대	443.0	장마면	유리	638	대	415.9	0.0	27.1	박*열	
191	장마면	유리	1255	전	212.0	장마면	유리	1255	전	212.0	0.0	0.0	박*성	
192	장마면	유리	508-7	대	397.0	장마면	유리	508-7	대	397.0	0.0	0.0	박*웅	
193	장마면	유리	1320	임야	1,134.0	장마면	유리	1320	임야	1,134.0	0.0	0.0	박*규	
194	장마면	유리	1321	전	942.0	장마면	유리	1321	전	942.0	0.0	0.0	박*규	
195	장마면	유리	671	묘지	506.0	장마면	유리	671	묘지	506.0	0.0	0.0	박*웅	
196	장마면	유리	646-1	도로	83.0	장마면	유리	646-1	도로	83.0	0.0	0.0	박*학	
197	장마면	유리	269	대	697.0	장마면	유리	269	대	782.4	85.4	0.0	박*연	
198	장마면	유리	645-1	도로	17.0	장마면	유리	645-1	도로	17.0	0.0	0.0	박*범	
199	장마면	유리	645-2	전	43.0	장마면	유리	645-2	전	43.0	0.0	0.0	박*범	
200	장마면	유리	403-1	대	175.0	장마면	유리	403-1	대	175.0	0.0	0.0	박*봉	
201	장마면	유리	389-3	전	303.0	장마면	유리	389-3	전	303.0	0.0	0.0	박*길	

202	장마면	유리	389-4	전	528.0	장마면	유리	389-4	전	528.0	0.0	0.0	박*길	
203	장마면	유리	1278	전	1,504.0	장마면	유리	1278	전	1,464.0	0.0	40.0	박*목	
204	장마면	유리	394	대	466.0	장마면	유리	394	대	355.4	0.0	110.6	박*희	
205	장마면	유리	494-1	대	125.0	장마면	유리	494-1	대	125.0	0.0	0.0	박*훈	
206	장마면	유리	500-2	전	437.0	장마면	유리	500-2	전	422.4	0.0	14.6	박*훈	
207	장마면	유리	658	대	655.0	장마면	유리	658	대	636.4	0.0	18.6	박*자	
208	장마면	유리	231-5	답	489.0	장마면	유리	231-5	답	489.0	0.0	0.0	박*광	
209	장마면	유리	349	대	813.0	장마면	유리	349	대	792.3	0.0	20.7	박*광	
210	장마면	유리	353	대	268.0	장마면	유리	353	대	296.7	28.7	0.0	박*광	
211	장마면	유리	353-1	도로	6.0	-	-	-	-	말소	0.0	6.0	박*광	
212	장마면	유리	384	대	437.0	장마면	유리	384	대	498.8	61.8	0.0	박*광	
213	장마면	유리	372	대	155.0	장마면	유리	372	대	155.0	0.0	0.0	박*민	
214	장마면	유리	420-2	묘지	407.0	장마면	유리	420-2	묘지	407.0	0.0	0.0	박*식	
215	장마면	유리	1311-2	임야	496.0	장마면	유리	1311-2	임야	496.0	0.0	0.0	박*춘	
216	장마면	유리	1303-1	전	2,033.0	장마면	유리	1303-1	전	2,033.0	0.0	0.0	박*해	
217	장마면	유리	333	전	2,420.0	장마면	유리	333	전	2,420.0	0.0	0.0	박*호	
218	장마면	유리	388-15	임야	576.0	장마면	유리	388-15	임야	529.1	0.0	46.9	박*화	
219	장마면	유리	1308	임야	661.0	장마면	유리	1308	임야	661.0	0.0	0.0	박*식	
220	장마면	유리	1250-1	전	318.0	장마면	유리	1250-1	전	302.0	0.0	16.0	박*도	
221	장마면	유리	689-1	답	2,344.0	장마면	유리	689-1	답	2,344.0	0.0	0.0	박*정	
222	장마면	유리	411	대	304.0	장마면	유리	411	대	304.0	0.0	0.0	박*관	
223	장마면	유리	332-3	전	1,736.0	장마면	유리	332-3	전	1,736.0	0.0	0.0	박*규	
224	장마면	유리	483	전	1,884.0	장마면	유리	483	전	1,884.0	0.0	0.0	박*규	
225	장마면	유리	399	대	202.0	장마면	유리	399	대	189.7	0.0	12.3	박*규	
226	장마면	유리	445	전	1,927.0	장마면	유리	445	전	1,877.9	0.0	49.1	박*규	
227	장마면	유리	500	대	503.0	장마면	유리	500	대	493.8	0.0	9.2	박*동	
228	장마면	유리	647-2	답	1,884.0	장마면	유리	647-2	답	1,845.6	0.0	38.4	박*숙	
229	장마면	유리	389-1	전	344.0	장마면	유리	389-1	전	344.0	0.0	0.0	박*생	
230	장마면	유리	1249	전	1,944.0	장마면	유리	1249	전	1,944.0	0.0	0.0	박*수	
231	장마면	유리	385	대	231.0	장마면	유리	385	대	191.3	0.0	39.7	박*인	
232	장마면	유리	466	전	2,165.0	장마면	유리	466	전	2,165.0	0.0	0.0	박*문	
233	장마면	유리	1301	전	1,028.0	장마면	유리	1301	전	1,028.0	0.0	0.0	박*호	
234	장마면	유리	625-2	대	340.0	장마면	유리	625-2	대	340.0	0.0	0.0	박*민	
235	장마면	유리	477	대	1,131.0	장마면	유리	477	대	1,131.0	0.0	0.0	박*홍	
236	장마면	유리	477-2	전	81.0	장마면	유리	477-2	전	81.0	0.0	0.0	박*홍	
237	장마면	유리	477-3	전	412.0	장마면	유리	477-3	전	412.0	0.0	0.0	박*홍	

238	장마면	유리	478	전	397.0	장마면	유리	478	전	352.3	0.0	44.7	박*홍	
239	장마면	유리	479	답	205.0	장마면	유리	479	답	109.3	0.0	95.7	박*홍	
240	장마면	유리	1270	전	202.0	장마면	유리	1270	전	107.4	0.0	94.6	박*홍	
241	장마면	유리	1291	묘지	241.0	장마면	유리	1291	묘지	241.0	0.0	0.0	박*홍	
242	장마면	유리	448	전	1,494.0	장마면	유리	448	전	1,494.0	0.0	0.0	박*우(외 1명)	
243	장마면	유리	668-1	임야	1,345.0	장마면	유리	668-1	임야	1,345.0	0.0	0.0	박*문	
244	장마면	유리	702	임야	169.0	장마면	유리	702	임야	169.0	0.0	0.0	박*준	
245	장마면	유리	719	임야	99.0	장마면	유리	719	임야	99.0	0.0	0.0	박*준	
246	장마면	유리	696	전	1,557.0	장마면	유리	696	전	1,557.0	0.0	0.0	박*수	
247	장마면	유리	419	전	595.0	장마면	유리	419	전	595.0	0.0	0.0	박*동	
248	장마면	유리	400-2	대	225.0	장마면	유리	400-2	대	225.0	0.0	0.0	박*목	
249	장마면	유리	402-1	대	50.0	장마면	유리	402-1	대	156.8	106.8	0.0	박*목	
250	장마면	유리	343	대	281.0	장마면	유리	343	대	313.9	32.9	0.0	박*근	
251	장마면	유리	358	대	129.0	-	-	-	-	말소	0.0	129.0	박*근	
252	장마면	유리	359	대	129.0	장마면	유리	359	대	93.5	0.0	35.5	박*근	
253	장마면	유리	485	전	235.0	장마면	유리	485	전	235.0	0.0	0.0	박*근	
254	장마면	유리	714	전	893.0	장마면	유리	714	전	893.0	0.0	0.0	박*근	
255	장마면	유리	1325	전	1,934.0	장마면	유리	1325	전	1,934.0	0.0	0.0	박*근	
256	장마면	유리	369	대	274.0	장마면	유리	369	대	274.0	0.0	0.0	배*한	
257	장마면	유리	388-12	임야	173.0	장마면	유리	388-12	임야	173.0	0.0	0.0	배*한	
258	장마면	유리	388-2	전	463.0	장마면	유리	388-2	전	463.0	0.0	0.0	배*태	
259	장마면	유리	364	전	132.0	장마면	유리	364	전	132.0	0.0	0.0	배*순	
260	장마면	유리	634-1	대	79.0	장마면	유리	634-1	대	79.0	0.0	0.0	서*식	
261	장마면	유리	634-2	도로	13.0	장마면	유리	634-2	도로	13.0	0.0	0.0	서*식	
262	장마면	유리	635-1	대	258.0	장마면	유리	635-1	대	258.0	0.0	0.0	서*식	
263	장마면	유리	635-2	도로	3.0	장마면	유리	635-2	도로	3.0	0.0	0.0	서*식	
264	장마면	유리	643-1	도로	10.0	장마면	유리	643-1	도로	10.0	0.0	0.0	서*식	
265	장마면	유리	643-3	도로	7.0	장마면	유리	643-3	도로	7.0	0.0	0.0	서*식	
266	장마면	유리	679	전	155.0	장마면	유리	679	전	155.0	0.0	0.0	서*식	
267	장마면	유리	1283-2	도로	17.0	장마면	유리	1283-2	도로	17.0	0.0	0.0	서*채	
268	장마면	유리	438	대	426.0	장마면	유리	438	대	426.0	0.0	0.0	서*수(외 1명)	
269	장마면	유리	1274-2	전	856.0	장마면	유리	1274-2	전	856.0	0.0	0.0	서*관	
270	장마면	유리	751-1	도로	46.0	장마면	유리	751-1	도로	46.0	0.0	0.0	서*술(외 1명)	
271	장마면	유리	497-1	도로	50.0	장마면	유리	497-1	도로	50.0	0.0	0.0	서*룡	
272	장마면	유리	623	답	982.0	장마면	유리	623	답	982.0	0.0	0.0	서*규	

273	장마면	유리	1282	답	1,365.0	장마면	유리	1282	답	1,245.9	0.0	119.1	서*애	
274	장마면	유리	1290	전	820.0	장마면	유리	1290	전	820.0	0.0	0.0	서*애	
275	장마면	유리	337	묘지	783.0	장마면	유리	337	묘지	783.0	0.0	0.0	서*수	
276	장마면	유리	659	대	245.0	장마면	유리	659	대	237.1	0.0	7.9	서*철	
277	장마면	유리	757	창고 용지	850.0	장마면	유리	757	창고 용지	942.7	92.7	0.0	서*철	
278	장마면	유리	757-1	전	856.0	장마면	유리	757-1	전	766.3	0.0	89.7	서*철	
279	장마면	유리	1312-1	전	364.0	장마면	유리	1312-1	전	364.0	0.0	0.0	서*탁	
280	장마면	유리	239	대	248.0	장마면	유리	239	대	248.0	0.0	0.0	서*용	
281	장마면	유리	322	전	770.0	장마면	유리	322	전	673.3	0.0	96.7	서*호	
282	장마면	유리	323	대	367.0	장마면	유리	323	대	375.0	8.0	0.0	서*호	
283	장마면	유리	324-1	대	17.0	장마면	유리	324-1	대	17.0	0.0	0.0	서*호	
284	장마면	유리	326	대	56.0	장마면	유리	326	대	56.0	0.0	0.0	서*호	
285	장마면	유리	329-2	대	289.0	장마면	유리	329-2	대	289.0	0.0	0.0	서*호	
286	장마면	유리	329-3	도로	83.0	장마면	유리	329-3	도로	89.0	6.0	0.0	서*호	
287	장마면	유리	330	대	274.0	장마면	유리	330	대	278.3	4.3	0.0	서*호	
288	장마면	유리	336	전	896.0	장마면	유리	336	전	875.7	0.0	20.3	서*호	
289	장마면	유리	339	대	175.0	장마면	유리	339	대	175.0	0.0	0.0	서*자	
290	장마면	유리	340	대	159.0	장마면	유리	340	대	218.5	59.5	0.0	서*자	
291	장마면	유리	654-1	도로	119.0	-	-	-	-	말소	0.0	119.0	서*도	
292	장마면	유리	626	전	215.0	장마면	유리	626	전	215.0	0.0	0.0	서*호	
293	장마면	유리	627-2	대	268.0	장마면	유리	627-2	대	268.0	0.0	0.0	서*호	
294	장마면	유리	633-1	대	337.0	장마면	유리	633-1	대	337.0	0.0	0.0	서*호	
295	장마면	유리	693-1	전	1,437.0	장마면	유리	693-1	전	1,475.9	38.9	0.0	서*호	
296	장마면	유리	694-2	전	231.0	장마면	유리	694-2	전	275.5	44.5	0.0	서*호	
297	장마면	유리	750-2	답	698.0	장마면	유리	750-2	답	698.0	0.0	0.0	서*호	
298	장마면	유리	382	대	305.0	장마면	유리	382	대	282.2	0.0	22.8	서*관	
299	장마면	유리	668-2	전	612.0	장마면	유리	668-2	전	612.0	0.0	0.0	서*석	
300	장마면	유리	412	대	426.0	장마면	유리	412	대	426.0	0.0	0.0	서*산 정	
301	장마면	유리	421	전	60.0	장마면	유리	421	전	60.0	0.0	0.0	서*산 정	
302	장마면	유리	422	임야	1,223.0	장마면	유리	422	임야	1,223.0	0.0	0.0	서*산 정	
303	장마면	유리	423	전	76.0	장마면	유리	423	전	76.0	0.0	0.0	서*산 정	
304	장마면	유리	449	전	1,762.0	장마면	유리	449	전	1,762.0	0.0	0.0	서*산 정	
305	장마면	유리	420-1	전	476.0	장마면	유리	420-1	전	476.0	0.0	0.0	서*도(외 1명)	
306	장마면	유리	1284-2	도로	13.0	장마면	유리	1284-2	도로	13.0	0.0	0.0	서*도(외 1명)	
307	장마면	유리	1285-2	묘지	23.0	장마면	유리	1285-2	묘지	23.0	0.0	0.0	서*도(외 1명)	

308	장마면	유리	1295-1	도로	13.0	장마면	유리	1295-1	도로	13.0	0.0	0.0	서*수	
309	장마면	유리	493	묘지	231.0	장마면	유리	493	묘지	231.0	0.0	0.0	서*진	
310	장마면	유리	640	대	284.0	장마면	유리	640	대	284.0	0.0	0.0	서*권	
311	장마면	유리	660-1	대	127.0	장마면	유리	660-1	대	127.0	0.0	0.0	서*권	
312	장마면	유리	691	답	833.0	장마면	유리	691	답	833.0	0.0	0.0	서*권	
313	장마면	유리	692	전	140.0	장마면	유리	692	전	108.7	0.0	31.3	서*권	
314	장마면	유리	678	전	493.0	장마면	유리	678	전	493.0	0.0	0.0	서*규	
315	장마면	유리	388-4	전	231.0	장마면	유리	388-4	전	253.7	22.7	0.0	서*열	
316	장마면	유리	392	대	1,330.0	장마면	유리	392	대	1,249.2	0.0	80.8	서*열	
317	장마면	유리	1337-3	대	660.0	장마면	유리	1337-3	대	660.0	0.0	0.0	서*열	
318	장마면	유리	1337-8	답	589.0	장마면	유리	1337-8	답	619.2	30.2	0.0	서*열	
319	장마면	유리	644-2	답	1,279.0	장마면	유리	644-2	답	1,216.7	0.0	62.3	서*용	
320	장마면	유리	663	대	299.0	장마면	유리	663	대	291.1	0.0	7.9	서*용	
321	장마면	유리	663-1	대	25.0	장마면	유리	663-1	대	25.0	0.0	0.0	서*용	
322	장마면	유리	665	대	188.0	장마면	유리	665	대	194.1	6.1	0.0	서*용	
323	장마면	유리	749-2	답	284.0	장마면	유리	749-2	답	256.6	0.0	27.4	서*용	
324	장마면	유리	511-1	대	822.0	장마면	유리	511-1	대	822.0	0.0	0.0	서*호	
325	장마면	유리	1273	전	992.0	장마면	유리	1273	전	992.0	0.0	0.0	서*호	
326	장마면	유리	1259	전	1,286.0	장마면	유리	1259	전	1,286.0	0.0	0.0	서*효	
327	장마면	유리	1276	임야	3,309.0	장마면	유리	1276	임야	3,309.0	0.0	0.0	서*숙	
328	장마면	유리	1281-2	전	184.0	장마면	유리	1281-2	전	174.3	0.0	9.7	서*숙	
329	장마면	유리	366	전	175.0	장마면	유리	366	전	175.0	0.0	0.0	서*정	
330	장마면	유리	367	전	136.0	장마면	유리	367	전	136.0	0.0	0.0	서*정	
331	장마면	유리	373-1	대	96.0	장마면	유리	373-1	대	96.0	0.0	0.0	서*정	
332	장마면	유리	401-1	대	264.0	장마면	유리	401-1	대	254.8	0.0	9.2	서*주	
333	장마면	유리	495-1	대	256.0	장마면	유리	495-1	대	264.8	8.8	0.0	설*연	
334	장마면	유리	495-3	대	47.0	장마면	유리	495-3	대	6.8	0.0	40.2	설*연	
335	장마면	유리	1316-1	전	800.0	장마면	유리	1316-1	전	800.0	0.0	0.0	성*자	
336	장마면	유리	447	임야	1,448.0	장마면	유리	447	임야	1,448.0	0.0	0.0	성*선	
337	장마면	유리	464-1	전	1,351.0	장마면	유리	464-1	전	1,313.6	0.0	37.4	성*화	
338	장마면	유리	1289-2	대	324.0	장마면	유리	1289-2	대	324.0	0.0	0.0	손*규	
339	장마면	유리	1322	임야	1,329.0	장마면	유리	1322	임야	1,329.0	0.0	0.0	손*시	
340	장마면	유리	1289-3	도로	13.0	장마면	유리	1289-3	도로	13.0	0.0	0.0	손*이	
341	장마면	유리	1315	전	721.0	장마면	유리	1315	전	721.0	0.0	0.0	손*민	
342	장마면	유리	1331	답	1,374.0	장마면	유리	1331	답	1,374.0	0.0	0.0	손*민	
343	장마면	유리	1316-2	임야	403.0	장마면	유리	1316-2	임야	403.0	0.0	0.0	손*국	
344	장마면	유리	234-2	전	1,052.0	장마면	유리	234-2	전	1,052.0	0.0	0.0	손*태	

345	장마면	유리	469	전	1,868.0	장마면	유리	469	전	1,868.0	0.0	0.0	송*태	
346	장마면	유리	1311-1	임야	1,504.0	장마면	유리	1311-1	임야	1,504.0	0.0	0.0	송*수	
347	장마면	유리	315-5	대	248.0	장마면	유리	315-5	대	232.9	0.0	15.1	송*복	
348	장마면	유리	317	대	172.0	장마면	유리	317	대	172.0	0.0	0.0	송*복	
349	장마면	유리	318	답	667.0	장마면	유리	318	답	678.9	11.9	0.0	송*복	
350	장마면	유리	318-1	답	173.0	장마면	유리	318-1	답	169.6	0.0	3.4	송*복	
351	장마면	유리	664	대	132.0	장마면	유리	664	대	128.7	0.0	3.3	송*복	
352	장마면	유리	680	대	169.0	장마면	유리	680	대	169.0	0.0	0.0	송*복	
353	장마면	유리	682	대	202.0	장마면	유리	682	대	196.6	0.0	5.4	송*복	
354	장마면	유리	263	대	1,051.0	장마면	유리	263	대	1,051.0	0.0	0.0	신*식	
355	장마면	유리	345	대	336.0	장마면	유리	345	대	313.0	0.0	23.0	신*용	
356	장마면	유리	499	대	466.0	장마면	유리	499	대	437.7	0.0	28.3	신*원	
357	장마면	유리	1261-1	전	846.0	장마면	유리	1261-1	전	846.0	0.0	0.0	신*찬	
358	장마면	유리	670	전	711.0	장마면	유리	670	전	711.0	0.0	0.0	신*남	
359	장마면	유리	379	대	205.0	장마면	유리	379	대	185.0	0.0	20.0	신*민	
360	장마면	유리	381	대	109.0	장마면	유리	381	대	67.9	0.0	41.1	신*민	
361	장마면	유리	388-8	대	552.0	장마면	유리	388-8	대	538.2	0.0	13.8	신*민	
362	장마면	유리	451	묘지	549.0	장마면	유리	451	묘지	549.0	0.0	0.0	신*식	
363	장마면	유리	345-1	대	14.0	장마면	유리	345-1	대	14.0	0.0	0.0	신*순	
364	장마면	유리	700	임야	4,264.0	장마면	유리	700	임야	4,202.4	0.0	61.6	신*채	
365	장마면	유리	388-7	임야	581.0	장마면	유리	388-7	임야	672.4	91.4	0.0	신*국	
366	장마면	유리	395	대	208.0	장마면	유리	395	대	202.1	0.0	5.9	신*국	
367	장마면	유리	1264-1	전	202.0	장마면	유리	1264-1	전	292.5	90.5	0.0	신*수	
368	장마면	유리	312	대	245.0	장마면	유리	312	대	226.9	0.0	18.1	신*기	
369	장마면	유리	315-1	대	205.0	장마면	유리	315-1	대	196.9	0.0	8.1	신*기	
370	장마면	유리	315-2	대	66.0	장마면	유리	315-2	대	66.0	0.0	0.0	신*기	
371	장마면	유리	226-2	대	147.0	장마면	유리	226-2	대	137.2	0.0	9.8	신*기	
372	장마면	유리	226-5	대	4.0	장마면	유리	226-5	대	4.0	0.0	0.0	신*기	
373	장마면	유리	235	임야	11,722.0	장마면	유리	235	임야	11,722.0	0.0	0.0	신*수	
374	장마면	유리	236	전	162.0	장마면	유리	236	전	162.0	0.0	0.0	신*수	
375	장마면	유리	328	대	119.0	장마면	유리	328	대	126.4	7.4	0.0	신*수	
376	장마면	유리	329-4	전	124.0	장마면	유리	329-4	전	124.0	0.0	0.0	심*숙	
377	장마면	유리	330-1	대	10.0	장마면	유리	330-1	대	10.0	0.0	0.0	심*숙	
378	장마면	유리	416	대	311.0	장마면	유리	416	대	457.3	146.3	0.0	심*정	
379	장마면	유리	417	전	357.0	장마면	유리	417	전	221.4	0.0	135.6	심*정	
380	장마면	유리	472	전	1,210.0	장마면	유리	472	전	1,210.0	0.0	0.0	안*근	
381	장마면	유리	1269	전	1,788.0	장마면	유리	1269	전	1,788.0	0.0	0.0	안*자	

382	장마면	유리	377	대	198.0	장마면	유리	377	대	239.5	41.5	0.0	안*수	
383	장마면	유리	388-10	임야	226.0	장마면	유리	388-10	임야	226.0	0.0	0.0	안*수	
384	장마면	유리	473	대	292.0	장마면	유리	473	대	292.0	0.0	0.0	양*례	
385	장마면	유리	473-1	전	3,648.0	장마면	유리	473-1	전	3,629.2	0.0	18.8	양*례	
386	장마면	유리	1279	전	621.0	장마면	유리	1279	전	621.0	0.0	0.0	어*들	
387	장마면	유리	669	임야	11,779.0	장마면	유리	669	임야	11,779.0	0.0	0.0	영**** 사공파 총회	
388	장마면	유리	272	대	445.0	장마면	유리	272	대	435.3	0.0	9.7	오*희	
389	장마면	유리	695	전	941.0	장마면	유리	695	전	1,004.1	63.1	0.0	오*열	
390	장마면	유리	502	묘지	1,200.0	장마면	유리	502	묘지	1,200.0	0.0	0.0	우**** 상공파 후신제 총중	
391	장마면	유리	408	대	572.0	장마면	유리	408	대	572.0	0.0	0.0	유*남	
392	장마면	유리	1277-1	답	321.0	장마면	유리	1277-1	답	321.0	0.0	0.0	윤*용	
393	장마면	유리	1277-2	묘지	1,117.0	장마면	유리	1277-2	묘지	1,117.0	0.0	0.0	윤*문	
394	장마면	유리	344	대	334.0	장마면	유리	344	대	334.0	0.0	0.0	윤*봉	
395	장마면	유리	427-2	대	227.0	장마면	유리	427-2	대	243.0	16.0	0.0	윤*봉	
396	장마면	유리	484	묘지	658.0	장마면	유리	484	묘지	632.4	0.0	25.6	이*선	
397	장마면	유리	1310	묘지	575.0	장마면	유리	1310	묘지	575.0	0.0	0.0	이*선	
398	장마면	유리	468	묘지	83.0	장마면	유리	468	묘지	83.0	0.0	0.0	이*지	
399	장마면	유리	489	묘지	241.0	장마면	유리	489	묘지	241.0	0.0	0.0	이*수	
400	장마면	유리	724	전	2,007.0	장마면	유리	724	전	2,007.0	0.0	0.0	이*	
401	장마면	유리	233	전	1,719.0	장마면	유리	233	전	1,719.0	0.0	0.0	이*연	
402	장마면	유리	232-2	전	1,103.0	장마면	유리	232-2	전	1,103.0	0.0	0.0	이*승	
403	장마면	유리	1317	임야	2,612.0	장마면	유리	1317	임야	2,612.0	0.0	0.0	이*승	
404	장마면	유리	508-6	대	203.0	장마면	유리	508-6	대	203.0	0.0	0.0	이*찬	
405	장마면	유리	1319-1	전	519.0	장마면	유리	1319-1	전	519.0	0.0	0.0	이*수	
406	장마면	유리	480	전	2,007.0	장마면	유리	480	전	1,917.2	0.0	89.8	이*영	
407	장마면	유리	1299	대	442.0	장마면	유리	1299	대	442.0	0.0	0.0	이*연	
408	장마면	유리	1299-1	전	543.0	장마면	유리	1299-1	전	607.6	64.6	0.0	이*연	
409	장마면	유리	1302	전	153.0	장마면	유리	1302	전	115.6	0.0	37.4	이*연	
410	장마면	유리	1302-1	대	22.0	장마면	유리	1302-1	대	22.0	0.0	0.0	이*연	
411	장마면	유리	232-1	도로	1.0	장마면	유리	232-1	도로	1.0	0.0	0.0	이*기(외 2명)	
412	장마면	유리	467	전	2,013.0	장마면	유리	467	전	2,013.0	0.0	0.0	이*기(외 2명)	
413	장마면	유리	620	전	106.0	장마면	유리	620	전	106.0	0.0	0.0	이*기(외 2명)	
414	장마면	유리	427	대	609.0	장마면	유리	427	대	609.0	0.0	0.0	이*민	
415	장마면	유리	646-2	대	251.0	장마면	유리	646-2	대	251.0	0.0	0.0	이*희	

416	장마면	유리	636	대	142.0	장마면	유리	636	대	140.0	0.0	2.0	이*용	
417	장마면	유리	463	전	1,157.0	장마면	유리	463	전	1,157.0	0.0	0.0	이*용	
418	장마면	유리	341	대	294.0	장마면	유리	341	대	246.1	0.0	47.9	이*옥	
419	장마면	유리	342	대	278.0	장마면	유리	342	대	184.0	0.0	94.0	이*옥	
420	장마면	유리	227	대	488.0	장마면	유리	227	대	504.4	16.4	0.0	이*봉	
421	장마면	유리	227-1	도로	57.0	장마면	유리	227-1	도로	57.0	0.0	0.0	이*봉	
422	장마면	유리	264	대	179.0	장마면	유리	264	대	206.2	27.2	0.0	이*봉	
423	장마면	유리	632	대	430.0	장마면	유리	632	대	430.0	0.0	0.0	이*주	
424	장마면	유리	1281	전	2,995.0	장마면	유리	1281	전	2,995.0	0.0	0.0	이*두	
425	장마면	유리	693	전	1,243.0	장마면	유리	693	전	1,206.1	0.0	36.9	이*임	
426	장마면	유리	751-2	답	1,425.0	장마면	유리	751-2	답	1,425.0	0.0	0.0	이*임	
427	장마면	유리	756	답	830.0	장마면	유리	756	답	830.0	0.0	0.0	이*임	
428	장마면	유리	357	대	76.0	장마면	유리	357	대	27.7	0.0	48.3	이*열	
429	장마면	유리	368-2	대	195.0	장마면	유리	368-2	대	195.0	0.0	0.0	이*열	
430	장마면	유리	1307-1	대	680.0	장마면	유리	1307-1	대	680.0	0.0	0.0	이*철	
431	장마면	유리	1253	전	1,815.0	장마면	유리	1253	전	1,815.0	0.0	0.0	이*순	
432	장마면	유리	1265	대	912.0	장마면	유리	1265	대	878.8	0.0	33.2	이*순	
433	장마면	유리	348	전	952.0	장마면	유리	348	전	952.0	0.0	0.0	이*재	
434	장마면	유리	497-2	대	257.0	장마면	유리	497-2	대	217.9	0.0	39.1	이*현	
435	장마면	유리	405	대	417.0	장마면	유리	405	대	379.6	0.0	37.4	이*수	
436	장마면	유리	406	대	208.0	장마면	유리	406	대	208.0	0.0	0.0	이*수	
437	장마면	유리	1319-2	전	1,332.0	장마면	유리	1319-2	전	1,332.0	0.0	0.0	이*석	
438	장마면	유리	1292	대	906.0	장마면	유리	1292	대	891.3	0.0	14.7	이*길	
439	장마면	유리	474	전	245.0	장마면	유리	474	전	245.0	0.0	0.0	이*이	
440	장마면	유리	618	답	902.0	장마면	유리	618	답	838.2	0.0	63.8	이*윤	
441	장마면	유리	619-1	답	3,706.0	장마면	유리	619-1	답	3,629.3	0.0	76.7	이*윤	
442	장마면	유리	621	답	585.0	장마면	유리	621	답	859.3	274.3	0.0	이*윤	
443	장마면	유리	622	답	972.0	장마면	유리	622	답	1,034.6	62.6	0.0	이*윤	
444	장마면	유리	331	대	453.0	장마면	유리	331	대	423.8	0.0	29.2	이*숙	
445	장마면	유리	1296	도로	103.0	-	-	-	-	말소	0.0	103.0	이*규	
446	장마면	유리	1296-1	전	4,629.0	장마면	유리	1296-1	전	4,400.5	0.0	228.5	이*규	
447	장마면	유리	1313	전	1,254.0	장마면	유리	1313	전	1,206.2	0.0	47.8	이*규	
448	장마면	유리	1314	대	317.0	장마면	유리	1314	대	317.0	0.0	0.0	이*규	
449	장마면	유리	1276-1	임야	205.0	장마면	유리	1276-1	임야	205.0	0.0	0.0	임*수	
450	장마면	유리	229-3	답	877.0	장마면	유리	229-3	답	867.4	0.0	9.6	장*구	
451	장마면	유리	1280-3	전	4.0	-	-	-	-	말소	0.0	4.0	장*식	
452	장마면	유리	237	전	311.0	장마면	유리	237	전	311.0	0.0	0.0	장*도	

453	장마면	유리	238	임야	212.0	장마면	유리	238	임야	209.0	0.0	3.0	장*도	
454	장마면	유리	352	전	221.0	장마면	유리	352	전	241.3	20.3	0.0	장*도	
455	장마면	유리	428-1	대	327.0	장마면	유리	428-1	대	474.5	147.5	0.0	장*득	
456	장마면	유리	434	대	202.0	장마면	유리	434	대	164.8	0.0	37.2	장*득	
457	장마면	유리	435-1	대	207.0	장마면	유리	435-1	대	207.0	0.0	0.0	장*득	
458	장마면	유리	254	대	188.0	장마면	유리	254	대	188.0	0.0	0.0	장*도	
459	장마면	유리	258	대	182.0	장마면	유리	258	대	182.0	0.0	0.0	장*도	
460	장마면	유리	259	대	69.0	장마면	유리	259	대	32.7	0.0	36.3	장*도	
461	장마면	유리	260-1	대	343.0	장마면	유리	260-1	대	343.0	0.0	0.0	장*도	
462	장마면	유리	624	답	2,139.0	장마면	유리	624	답	2,139.0	0.0	0.0	장*도	
463	장마면	유리	716	전	2,215.0	장마면	유리	716	전	2,215.0	0.0	0.0	장*도	
464	장마면	유리	230-5	답	653.0	장마면	유리	230-5	답	653.0	0.0	0.0	장*준(외 1명)	
465	장마면	유리	261	대	221.0	장마면	유리	261	대	203.0	0.0	18.0	장*준	
466	장마면	유리	266	대	221.0	장마면	유리	266	대	221.0	0.0	0.0	장*준	
467	장마면	유리	267	대	132.0	장마면	유리	267	대	132.0	0.0	0.0	장*준	
468	장마면	유리	268	대	169.0	장마면	유리	268	대	169.0	0.0	0.0	장*준	
469	장마면	유리	271	전	228.0	장마면	유리	271	전	209.6	0.0	18.4	장*준	
470	장마면	유리	704	임야	1,772.0	장마면	유리	704	임야	1,772.0	0.0	0.0	장*준	
471	장마면	유리	705	임야	486.0	장마면	유리	705	임야	486.0	0.0	0.0	장*준	
472	장마면	유리	1268	전	853.0	장마면	유리	1268	전	857.3	4.3	0.0	장*자	
473	장마면	유리	673-1	임야	231.0	장마면	유리	673-1	임야	231.0	0.0	0.0	장*순	
474	장마면	유리	270-2	도로	66.0	장마면	유리	270-2	도로	66.0	0.0	0.0	장*문	
475	장마면	유리	644-1	도로	17.0	장마면	유리	644-1	도로	17.0	0.0	0.0	장*문	
476	장마면	유리	722-2	임야	836.0	장마면	유리	722-2	임야	836.0	0.0	0.0	전*용	
477	장마면	유리	산79	임야	7,127.0	장마면	유리	722-5	임야	6,976.2	0.0	150.8	전*용	
478	장마면	유리	산79-3	임야	305.0	장마면	유리	722-3	임야	274.3	0.0	30.7	전*용	
479	장마면	유리	455	전	334.0	장마면	유리	455	전	206.5	0.0	127.5	전*옥	
480	장마면	유리	1328	전	489.0	장마면	유리	1328	전	281.0	0.0	208.0	전*옥	
481	장마면	유리	457	전	477.0	장마면	유리	457	전	477.0	0.0	0.0	전*옥	
482	장마면	유리	683	대	541.0	장마면	유리	683	대	519.5	0.0	21.5	정*민	
483	장마면	유리	497-3	대	110.0	장마면	유리	497-3	대	110.0	0.0	0.0	정*근	
484	장마면	유리	685-1	대	274.0	장마면	유리	685-1	대	274.0	0.0	0.0	정*주	
485	장마면	유리	686	대	268.0	장마면	유리	686	대	261.4	0.0	6.6	정*주	
486	장마면	유리	355	대	324.0	장마면	유리	355	대	333.4	9.4	0.0	정*식	
487	장마면	유리	495-2	대	165.0	장마면	유리	495-2	대	165.0	0.0	0.0	정*용	
488	장마면	유리	496	대	119.0	장마면	유리	496	대	119.0	0.0	0.0	정*용	

489	장마면	유리	260	대	309.0	장마면	유리	260	대	292.0	0.0	17.0	정*연	
490	장마면	유리	718	전	783.0	장마면	유리	718	전	783.0	0.0	0.0	정*진	
491	장마면	유리	247	대	264.0	장마면	유리	247	대	233.2	0.0	30.8	정*선	
492	장마면	유리	683-1	대	540.0	장마면	유리	683-1	대	522.8	0.0	17.2	정*주	
493	장마면	유리	684	대	172.0	장마면	유리	684	대	172.0	0.0	0.0	정*주	
494	장마면	유리	1283-3	대	435.0	장마면	유리	1283-3	대	459.7	24.7	0.0	정*순	
495	장마면	유리	1283-4	도로	38.0	-	-	-	-	말소	0.0	38.0	정*순	
496	장마면	유리	1283-5	답	1,146.0	장마면	유리	1283-5	답	1,132.2	0.0	13.8	정*순	
497	장마면	유리	619-2	답	1,888.0	장마면	유리	619-2	답	1,577.5	0.0	310.5	정*리	
498	장마면	유리	507	대	655.0	장마면	유리	507	대	643.9	0.0	11.1	정*숙	
499	장마면	유리	442	대	413.0	장마면	유리	442	대	493.3	80.3	0.0	조*래	
500	장마면	유리	444	전	1,230.0	장마면	유리	444	전	1,169.2	0.0	60.8	조*래	
501	장마면	유리	400-1	도로	7.0	장마면	유리	400-1	도로	7.0	0.0	0.0	조*제	
502	장마면	유리	400-3	도로	13.0	장마면	유리	400-3	도로	13.0	0.0	0.0	조*제	
503	장마면	유리	1294-2	대	446.0	장마면	유리	1294-2	대	408.8	0.0	37.2	조*라	
504	장마면	유리	1295-2	대	440.0	장마면	유리	1295-2	대	427.7	0.0	12.3	조*라	
505	장마면	유리	388-17	임야	310.0	장마면	유리	388-17	임야	305.6	0.0	4.4	조*숙	
506	장마면	유리	1248	전	961.0	장마면	유리	1248	전	939.3	0.0	21.7	조*자	
507	장마면	유리	265	대	342.0	장마면	유리	265	대	350.9	8.9	0.0	조*래	
508	장마면	유리	265-1	대	458.0	장마면	유리	265-1	대	431.5	0.0	26.5	조*래	
509	장마면	유리	703	전	317.0	장마면	유리	703	전	317.0	0.0	0.0	조*임	
510	장마면	유리	312-1	대	248.0	장마면	유리	312-1	대	264.8	16.8	0.0	조*복	
511	장마면	유리	315-3	대	254.0	장마면	유리	315-3	대	297.8	43.8	0.0	조*복	
512	장마면	유리	486	전	1,339.0	장마면	유리	486	전	1,339.0	0.0	0.0	조*복	
513	장마면	유리	487-2	전	1,207.0	장마면	유리	487-2	전	1,207.0	0.0	0.0	조*제	
514	장마면	유리	637-2	도로	69.0	장마면	유리	637-2	도로	69.0	0.0	0.0	조*윤	
515	장마면	유리	637-3	대	7.0	장마면	유리	637-3	대	7.0	0.0	0.0	조*윤	
516	장마면	유리	652	전	1,603.0	장마면	유리	652	전	1,573.1	0.0	29.9	조*필	
517	장마면	유리	1241-4	전	248.0	장마면	유리	1241-4	전	248.0	0.0	0.0	조*진	
518	장마면	유리	500-1	대	505.0	장마면	유리	500-1	대	550.7	45.7	0.0	조*옥	
519	장마면	유리	380-1	대	8.0	장마면	유리	380-1	대	8.0	0.0	0.0	조*구	
520	장마면	유리	396	대	294.0	장마면	유리	396	대	283.3	0.0	10.7	조*구	
521	장마면	유리	338	대	357.0	장마면	유리	338	대	368.6	11.6	0.0	조*화	
522	장마면	유리	378	창고 용지	215.0	장마면	유리	378	창고 용지	178.0	0.0	37.0	조*고	
523	장마면	유리	243	대	96.0	장마면	유리	243	대	96.0	0.0	0.0	조*국	
524	장마면	유리	244	대	241.0	장마면	유리	244	대	241.0	0.0	0.0	조*국	
525	장마면	유리	226	대	1,200.0	장마면	유리	226	대	1,200.0	0.0	0.0	조*대	

526	장마면	유리	228	답	747.0	장마면	유리	228	답	789.6	42.6	0.0	조*대	
527	장마면	유리	229-6	답	260.0	장마면	유리	229-6	답	260.0	0.0	0.0	조*대	
528	장마면	유리	319	전	268.0	장마면	유리	319	전	268.0	0.0	0.0	조*대	
529	장마면	유리	722-1	전	1,018.0	장마면	유리	722-1	전	934.0	0.0	84.0	조*대	
530	장마면	유리	439	대	602.0	장마면	유리	439	대	558.9	0.0	43.1	조*돌	
531	장마면	유리	440	대	516.0	장마면	유리	440	대	439.8	0.0	76.2	조*돌	
532	장마면	유리	241	대	585.0	장마면	유리	241	대	548.2	0.0	36.8	조*목	
533	장마면	유리	242	대	185.0	장마면	유리	242	대	185.0	0.0	0.0	조*목	
534	장마면	유리	249	대	241.0	장마면	유리	249	대	288.6	47.6	0.0	조*목	
535	장마면	유리	255	목장 용지	258.0	장마면	유리	255	목장 용지	231.3	0.0	26.7	조*목	
536	장마면	유리	303	전	155.0	장마면	유리	303	전	139.9	0.0	15.1	조*봉	
537	장마면	유리	304	전	202.0	장마면	유리	304	전	202.0	0.0	0.0	조*봉	
538	장마면	유리	305	대	215.0	장마면	유리	305	대	215.0	0.0	0.0	조*봉	
539	장마면	유리	306	대	109.0	장마면	유리	306	대	61.3	0.0	47.7	조*봉	
540	장마면	유리	307	대	764.0	장마면	유리	307	대	764.0	0.0	0.0	조*봉	
541	장마면	유리	308	임야	109.0	장마면	유리	308	임야	147.3	38.3	0.0	조*봉	
542	장마면	유리	309	임야	66.0	장마면	유리	309	임야	66.0	0.0	0.0	조*봉	
543	장마면	유리	310	대	321.0	장마면	유리	310	대	321.0	0.0	0.0	조*봉	
544	장마면	유리	311	대	575.0	장마면	유리	311	대	575.0	0.0	0.0	조*봉	
545	장마면	유리	313	대	374.0	장마면	유리	313	대	356.0	0.0	18.0	조*봉	
546	장마면	유리	314	대	132.0	장마면	유리	314	대	132.0	0.0	0.0	조*봉	
547	장마면	유리	315-4	대	331.0	장마면	유리	315-4	대	331.0	0.0	0.0	조*봉	
548	장마면	유리	316	전	357.0	장마면	유리	316	전	357.0	0.0	0.0	조*봉	
549	장마면	유리	360	대	202.0	장마면	유리	360	대	202.0	0.0	0.0	조*석	
550	장마면	유리	361	대	208.0	장마면	유리	361	대	178.5	0.0	29.5	조*석	
551	장마면	유리	252	대	235.0	장마면	유리	252	대	261.0	26.0	0.0	조*석	
552	장마면	유리	253	대	73.0	장마면	유리	253	대	73.0	0.0	0.0	조*석	
553	장마면	유리	321	전	562.0	장마면	유리	321	전	557.0	0.0	5.0	조*석	
554	장마면	유리	488	임야	1,759.0	장마면	유리	488	임야	1,759.0	0.0	0.0	조*제	
555	장마면	유리	689-2	도로	30.0	장마면	유리	689-2	도로	30.0	0.0	0.0	조*제	
556	장마면	유리	689-3	도로	53.0	장마면	유리	689-3	도로	53.0	0.0	0.0	조*제	
557	장마면	유리	1336-2	참고 용지	1,112.0	장마면	유리	1336-2	참고 용지	1,112.0	0.0	0.0	주**** 은하늘 태양광 전용기 업	
558	장마면	유리	453	전	8,675.0	장마면	유리	453	전	8,675.0	0.0	0.0	주**** 녕나라	
559	장마면	유리	453-3	전	120.0	장마면	유리	453-3	전	120.0	0.0	0.0	주**** 녕나라	
560	장마면	유리	494	대	668.0	장마면	유리	494	대	668.0	0.0	0.0	진*수	

561	장마면	유리	388-14	과수 원	291.0	장마면	유리	388-14	과수 원	305.7	14.7	0.0	진*숙	
562	장마면	유리	443-1	대	466.0	장마면	유리	443-1	대	466.0	0.0	0.0	진**** 파공 노감 공 중 회	
563	장마면	유리	334-1	전	1,669.0	장마면	유리	334-1	전	1,669.0	0.0	0.0	진*수	
564	장마면	유리	256	대	228.0	장마면	유리	256	대	241.9	13.9	0.0	진*순	
565	장마면	유리	1323	묘지	307.0	장마면	유리	1323	묘지	307.0	0.0	0.0	차*의	
566	장마면	유리	1324	전	1,025.0	장마면	유리	1324	전	1,025.0	0.0	0.0	차*도	
567	장마면	유리	1332	임야	2,465.0	장마면	유리	1332	임야	2,465.0	0.0	0.0	차*도	
568	장마면	유리	222-2	도로	7.0	-	-	-	-	말소	0.0	7.0	창녕군	
569	장마면	유리	226-3	대	38.0	-	-	-	-	말소	0.0	38.0	창녕군	
570	장마면	유리	226-4	대	28.0	-	-	-	-	말소	0.0	28.0	창녕군	
571	장마면	유리	228-1	답	177.0	-	-	-	-	말소	0.0	177.0	창녕군	
572	장마면	유리	234-1	도로	30.0	-	-	-	-	말소	0.0	30.0	창녕군	
573	장마면	유리	234-4	임야	79.0	장마면	유리	234-4	임야	79.0	0.0	0.0	창녕군	
574	장마면	유리	270-1	답	389.0	장마면	유리	270-1	답	370.6	0.0	18.4	창녕군	
575	장마면	유리	270-3	답	180.0	장마면	유리	270-3	답	132.8	0.0	47.2	창녕군	
576	장마면	유리	272-1	대	104.0	장마면	유리	272-1	대	81.4	0.0	22.6	창녕군	
577	장마면	유리	382-1	대	6.0	-	-	-	-	말소	0.0	6.0	창녕군	
578	장마면	유리	431-1	유지	1,373.0	장마면	유리	431-1	유지	818.1	0.0	554.9	창녕군	
579	장마면	유리	500-3	대	3.0	-	-	-	-	말소	0.0	3.0	창녕군	
580	장마면	유리	500-4	전	7.0	장마면	유리	500-4	전	44.0	37.0	0.0	창녕군	
581	장마면	유리	508-5	대	41.0	장마면	유리	508-5	대	49.4	8.4	0.0	창녕군	
582	장마면	유리	510-3	유지	1,168.0	장마면	유리	510-3	유지	574.9	0.0	593.1	창녕군	
583	장마면	유리	627-1	도로	23.0	-	-	-	-	말소	0.0	23.0	창녕군	
584	장마면	유리	628-2	전	66.0	장마면	유리	628-2	전	70.0	4.0	0.0	창녕군	
585	장마면	유리	630-1	임야	565.0	장마면	유리	630-1	임야	565.0	0.0	0.0	창녕군	
586	장마면	유리	630-2	도로	52.0	-	-	-	-	말소	0.0	52.0	창녕군	
587	장마면	유리	631-1	대	876.0	장마면	유리	631-1	대	839.7	0.0	36.3	창녕군	
588	장마면	유리	690-1	도로	738.0	장마면	유리	690-1	도로	693.7	0.0	44.3	창녕군	
589	장마면	유리	747-1	도로	223.0	장마면	유리	747-1	도로	166.0	0.0	57.0	창녕군	
590	장마면	유리	749-1	도로	70.0	-	-	-	-	말소	0.0	70.0	창녕군	
591	장마면	유리	1235-1	유지	1,330.0	장마면	유리	1235-1	유지	709.5	0.0	620.5	창녕군	
592	장마면	유리	1241-2	도로	3,879.0	장마면	유리	1241-2	도로	4,181.1	302. 1	0.0	창녕군	
593	장마면	유리	1247	임야	271.0	장마면	유리	1247	임야	271.0	0.0	0.0	창녕군	
594	장마면	유리	1248-1	전	31.0	-	-	-	-	말소	0.0	31.0	창녕군	
595	장마면	유리	1280-2	전	34.0	-	-	-	-	말소	0.0	34.0	창녕군	

596	장마면	유리	1296-2	전	262.0	장마면	유리	1296-2	전	177.3	0.0	84.7	창녕군	
597	장마면	유리	1326-1	전	45.0	장마면	유리	1326-1	전	53.7	8.7	0.0	창녕군	
598	장마면	유리	1331-1	답	216.0	장마면	유리	1331-1	답	233.3	17.3	0.0	창녕군	
599	장마면	유리	1332-1	임야	15.0	장마면	유리	1332-1	임야	18.7	3.7	0.0	창녕군	
600	장마면	유리	1332-2	임야	85.0	장마면	유리	1332-2	임야	197.0	112.0	0.0	창녕군	
601	장마면	유리	1334-3	전	517.0	장마면	유리	1334-3	전	517.0	0.0	0.0	창녕군	
602	장마면	유리	1335-1	답	552.0	장마면	유리	1335-1	답	438.7	0.0	113.3	창녕군	
603	장마면	유리	1335-2	답	186.0	장마면	유리	1335-2	답	311.7	125.7	0.0	창녕군	
604	장마면	유리	1336-4	답	9.0	-	-	-	-	말소	0.0	9.0	창녕군	
605	장마면	유리	1337-5	답	50.0	장마면	유리	1337-5	답	54.4	4.4	0.0	창녕군	
606	장마면	유리	1337-6	잡종지	435.0	장마면	유리	1337-6	잡종지	447.4	12.4	0.0	창녕군	
607	장마면	유리	1337-7	잡종지	288.0	장마면	유리	1337-7	잡종지	200.9	0.0	87.1	창녕군	
608	장마면	유리	산79-1	도로	158.0	장마면	유리	722-4	도로	212.4	54.4	0.0	창녕군	
609	장마면	유리	262	대	635.0	장마면	유리	262	대	619.8	0.0	15.2	최*미	
610	장마면	유리	89-3	전	83.0	장마면	유리	89-3	전	83.0	0.0	0.0	최*원	
611	장마면	유리	351	대	900.0	장마면	유리	351	대	900.0	0.0	0.0	최*춘	
612	장마면	유리	351-1	전	345.0	장마면	유리	351-1	전	345.0	0.0	0.0	최*춘	
613	장마면	유리	354-1	대	78.0	장마면	유리	354-1	대	78.0	0.0	0.0	최*춘	
614	장마면	유리	511-2	대	4.0	장마면	유리	511-2	대	4.0	0.0	0.0	최*출	
615	장마면	유리	1403-1	답	26.0	장마면	유리	1403-1	답	26.0	0.0	0.0	최*룡	
616	장마면	유리	329-1	도로	20.0	장마면	유리	329-1	도로	20.0	0.0	0.0	최*권	
617	장마면	유리	371	대	281.0	장마면	유리	371	대	281.0	0.0	0.0	최*규	
618	장마면	유리	388-11	임야	54.0	장마면	유리	388-11	임야	54.0	0.0	0.0	최*규	
619	장마면	유리	250	대	496.0	장마면	유리	250	대	496.0	0.0	0.0	최*태	
620	장마면	유리	446	전	526.0	장마면	유리	446	전	526.0	0.0	0.0	최*부	
621	장마면	유리	511	대	665.0	장마면	유리	511	대	665.0	0.0	0.0	최*부	
622	장마면	유리	655	대	340.0	장마면	유리	655	대	308.5	0.0	31.5	최*연	
623	장마면	유리	234-3	전	1,207.0	장마면	유리	234-3	전	1,207.0	0.0	0.0	최*출	
624	장마면	유리	335	묘지	529.0	장마면	유리	335	묘지	529.0	0.0	0.0	최*룡	
625	장마면	유리	320	전	231.0	장마면	유리	320	전	231.0	0.0	0.0	최*용	
626	장마면	유리	324	전	267.0	장마면	유리	324	전	233.5	0.0	33.5	최*용	
627	장마면	유리	325	대	321.0	장마면	유리	325	대	321.0	0.0	0.0	최*용	
628	장마면	유리	330-2	대	17.0	장마면	유리	330-2	대	17.0	0.0	0.0	최*용	
629	장마면	유리	380	대	719.0	장마면	유리	380	대	719.0	0.0	0.0	하*숙	
630	장마면	유리	397	대	274.0	장마면	유리	397	대	274.0	0.0	0.0	하*수	
631	장마면	유리	398	대	162.0	장마면	유리	398	대	149.8	0.0	12.2	하*수	

632	장마면	유리	407	전	205.0	장마면	유리	407	전	205.0	0.0	0.0	하*수	
633	장마면	유리	413	전	132.0	장마면	유리	413	전	132.0	0.0	0.0	하*연	
634	장마면	유리	415	대	89.0	장마면	유리	415	대	89.0	0.0	0.0	하*연	
635	장마면	유리	427-1	대	113.0	장마면	유리	427-1	대	127.1	14.1	0.0	하*마을회	
636	장마면	유리	470	전	1,931.0	장마면	유리	470	전	1,931.0	0.0	0.0	하*목	
637	장마면	유리	1326	전	3,119.0	장마면	유리	1326	전	3,119.0	0.0	0.0	학****양학원	
638	장마면	유리	300-1	도로	882.0	장마면	유리	300-1	도로	611.5	0.0	270.5	한국농공 어촌사	
639	장마면	유리	401-2	도로	26.0	장마면	유리	401-2	도로	14.3	0.0	11.7	한국농공 어촌사	
640	장마면	유리	402-2	도로	430.0	장마면	유리	402-2	도로	287.3	0.0	142.7	한국농공 어촌사	
641	장마면	유리	431	유지	449.0	장마면	유리	431	유지	656.5	207.5	0.0	한국농공 어촌사	
642	장마면	유리	432	유지	612.0	장마면	유리	432	유지	240.2	0.0	371.8	한국농공 어촌사	
643	장마면	유리	433-1	임야	63.0	장마면	유리	433-1	임야	50.8	0.0	12.2	한국농공 어촌사	
644	장마면	유리	433-2	도로	162.0	장마면	유리	433-2	도로	67.4	0.0	94.6	한국농공 어촌사	
645	장마면	유리	508-2	도로	288.0	장마면	유리	508-2	도로	306.3	18.3	0.0	한국농공 어촌사	
646	장마면	유리	509-1	도로	843.0	장마면	유리	509-1	도로	843.0	0.0	0.0	한국농공 어촌사	
647	장마면	유리	510-2	유지	796.0	장마면	유리	510-2	유지	930.6	134.6	0.0	한국농공 어촌사	
648	장마면	유리	512-1	도로	496.0	장마면	유리	512-1	도로	500.2	4.2	0.0	한국농공 어촌사	
649	장마면	유리	517-1	도로	109.0	장마면	유리	517-1	도로	93.9	0.0	15.1	한국농공 어촌사	
650	장마면	유리	1235	유지	2,548.0	장마면	유리	1235	유지	3,007.9	459.9	0.0	한국농공 어촌사	
651	장마면	유리	1303-2	도로	198.0	장마면	유리	1303-2	도로	188.1	0.0	9.9	한국농공 어촌사	
652	장마면	유리	1334-1	구거	255.0	장마면	유리	1334-1	구거	236.8	0.0	18.2	한국농공 어촌사	
653	장마면	유리	1245	전	228.0	장마면	유리	1245	전	228.0	0.0	0.0	한*수	
654	장마면	유리	1412-1	전	813.0	장마면	유리	1412-1	전	813.0	0.0	0.0	한*수	
655	장마면	유리	1307	대	679.0	장마면	유리	1307	대	679.0	0.0	0.0	한*섭	
656	장마면	유리	1283-1	대	600.0	장마면	유리	1283-1	대	534.4	0.0	65.6	허*연	
657	장마면	유리	1283-7	답	736.0	장마면	유리	1283-7	답	736.0	0.0	0.0	허*연	
658	장마면	유리	629-1	임야	112.0	장마면	유리	629-1	임야	112.0	0.0	0.0	현*규	
659	장마면	유리	629-2	도로	23.0	장마면	유리	629-2	도로	23.0	0.0	0.0	현*규	

660	장마면	유리	1327	답	554.0	장마면	유리	1327	답	554.0	0.0	0.0	황*	
661	장마면	유리	1327-1	답	609.0	장마면	유리	1327-1	답	846.8	237.8	0.0	황*	
662	장마면	유리	1327-2	답	123.0	장마면	유리	1327-2	답	120.0	0.0	3.0	황*	
663	장마면	유리	1328-1	전	599.0	장마면	유리	1328-1	전	599.0	0.0	0.0	황*	
664	장마면	유리	1329	답	575.0	장마면	유리	1329	답	426.3	0.0	148.7	황*	
665	장마면	유리	1330-1	답	1,547.0	장마면	유리	1330-1	답	1,547.0	0.0	0.0	황*	
666	장마면	유리	1330-2	답	803.0	장마면	유리	1330-2	답	655.8	0.0	147.2	황*	
667	장마면	유리	1330-3	답	595.0	장마면	유리	1330-3	답	636.9	41.9	0.0	황*	
668	장마면	유리	1286-1	도로	20.0	장마면	유리	1286-1	도로	20.0	0.0	0.0	황*성	
669	장마면	유리	1286-2	답	50.0	장마면	유리	1286-2	답	50.0	0.0	0.0	황*성	
670	장마면	유리	495	대	542.0	장마면	유리	495	대	521.8	0.0	20.2	황*옥	
671	장마면	유리	495-4	대	78.0	장마면	유리	495-4	대	78.0	0.0	0.0	황*옥	
672	장마면	유리	498	대	238.0	장마면	유리	498	대	238.0	0.0	0.0	황*옥	
673	장마면	유리	633-2	도로	30.0	장마면	유리	633-2	도로	30.0	0.0	0.0	황*성	
674	장마면	유리	1319-3	전	1,293.0	장마면	유리	1319-3	전	1,293.0	0.0	0.0	황*순	
675	장마면	유리	1319-4	전	592.0	장마면	유리	1319-4	전	592.0	0.0	0.0	황*순	
676	장마면	유리	1281-1	전	607.0	장마면	유리	1281-1	전	607.0	0.0	0.0	황*근	
677	장마면	유리	1318	임야	10,952.0	장마면	유리	1318	임야	10,952.0	0.0	0.0	황*백(외 2명)	
678	장마면	유리	504-1	전	790.0	장마면	유리	504-1	전	790.0	0.0	0.0	황*순	
679	장마면	유리	504-2	전	787.0	장마면	유리	504-2	전	759.7	0.0	27.3	황*순	
680	장마면	유리	376	대	231.0	장마면	유리	376	대	251.8	20.8	0.0	황*순	
681	장마면	유리	1272	전	1,273.0	장마면	유리	1272	전	1,273.0	0.0	0.0	황*성	
682	장마면	유리	453-2	전	806.0	장마면	유리	453-2	전	806.0	0.0	0.0	황*석	
683	장마면	유리	706-2	전	1,107.0	장마면	유리	706-2	전	1,107.0	0.0	0.0	황*안	
684	장마면	유리	302	답	1,471.0	장마면	유리	302	답	1,450.6	0.0	20.4	황*숙	

창녕군 공고 제2024 - 57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7일

창녕군수

1. 목적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유실 및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 행정예고 기간: 2024. 3. 28. ~ 4. 17.(21일간)
- 공고방법: 창녕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4. 3. 28. ~ 4. 17.(21일간)
-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전자우편(hotshot@korea.kr)
- 제출처: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창녕군 안전치수과)

○ 문의처: 창녕군청 안전치수과 재난대응팀 담당자 박창수 ☎ 055)530-1834

※ 제출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치	등급 (점수)	면적(m ²)	경사각	지정사유	비고
대산1지구	성산면 대산리 산152-1번지 일원	D(62)	10,290	70°	재해위험도 평가에 따른 지구 지정	

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예산사업비	사업내용
대산1지구	2025. 1. ~ 2027. 12.	2,200백만원	사면 정비 1식 (옹벽+ 표면보호공)

※ 사업시기, 사업예산, 사업내용은 국·도비 지원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7.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우리군 안전치수과와 협의하여야 함.

- 붙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위치도 및 전경사진(대산1지구)



경상남도 창원군 성산면 대산리 산152-1번지 일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의견서

주 소			
성 명		연락처	